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인 쇄 2009년 12월

발 행 2009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협력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인수동(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가 격 ₩7,500

©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 전성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cm. -- (KINU 연구총서 ; 09-01)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8479-509-9 93340 ₩7,500

북핵 문제[北核問題]

한미 협력[韓美協力]

349.9-KDC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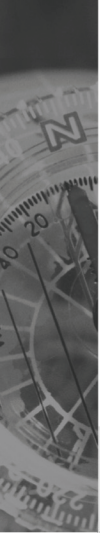
327.1747-DDC21

CIP2009003836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서론 .....	1
1. 문제제기 .....	3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	11
II.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	17
1. 노무현 정부의 한·미관계 .....	19
2. 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 .....	29
III. 북핵폐기 이전의 한·미 안보협력 .....	37
1. 북한의 핵위협 평가 .....	39
2. 인도·파키스탄 사례의 부정적 함의 .....	43
3.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 .....	52
4. 북핵에 대한 일본의 대응 .....	58
5. 북핵억지를 위한 협력방안 .....	63

IV. 북한 비핵화 추진시 한·미협력	95
1. 구소련의 비핵화 경험	97
2. 북핵폐기 관련 쟁점사항	114
3. 북한 비핵화 협력방안	135
참고문헌	15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3



# 표 목 차

<표 III-1> 주요 요소별 북한의 예상 핵능력(1990년대 중반) ……	40
<표 III-2> 초급기술 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1990년대 중반) ……	41
<표 III-3> 중급기술 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1990년대 중반) ……	41
<표 III-4> 주요 요소별 북한의 예상 핵능력(2009년 말) ……	42
<표 III-5> 초급기술 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2009년 말) ……	43
<표 III-6> 중급기술 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2009년 말) ……	43
<표 IV-1> STCU가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었는가? ……	105
<표 IV-2> 유익했던 STCU 프로그램은? ……	106
<표 IV-3> 북한의 핵포기 시나리오 ……	115
<표 IV-4> 미국 CSIS의 각국 역할 도표 ……	121
<표 IV-5> 북핵폐기·검증과정에서 각국의 바람직한 역할 ……	122
<표 IV-6> 원자로 유형별 해체비용 ……	130
<표 IV-7> 북한 비핵화에 임하는 한국의 기본입장 ……	140

# 그림 목 차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그림 III-1>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정책 .....	82
<그림 IV-1> 다른 나라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WMD 과학자 분포 : 러시아 .....	100
<그림 IV-2> WMD·이중용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 러시아 .....	101
<그림 IV-3> 다른 나라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WMD 과학자 분포 : 우크라이나 .....	103
<그림 IV-4> WMD·이중용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 우크라이나 .....	104





# I. 서론



다  
영  
한  
권  
권  
에  
중  
심  
적  
인  
지  
지  
미  
·  
한  
한  
아  
의  
학  
의  
비  
판  
과



## 1. 문제제기

2009년 들어 북한당국의 대남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남한 때리기’와 ‘미국 시선 끌기’를 두 축으로 해서 전개된 북한의 파상공세로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높아졌다. 2008년 한 해 6·15, 10·4 선언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명박 정부를 압박했던 북한은 2009년 들어 공세의 수위를 한 층 높였다. 연초에 조평통이 “남북 간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를 선언했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포하고 “주한미군과 남한의 핵폐기”를 요구했다. 이후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을 구금했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6자회담을 거부했으며,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와 폐쇄 가능성”까지 통보했다. 더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탄에 잠긴 우리에게 보란 듯이 2차 핵실험까지 했다. 김정일이 핵과 미사일을 무기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 판을 벌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전략은 공세적이다.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시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5개항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공세에서 유화로 전술적인 전환을 도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서울을 방문한 북한 조문단도 강력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입장변화는 한국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과 유엔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지도부가 남북대화를 통해서 정권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전술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 가. 6자회담 평가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주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6자회담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는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꺾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는 차지하고서라도, 2003년 8월에 시작된 6자회담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2차 핵실험이 있기 전까지 6자회담을 중심으로 전개된 북핵문제의 주요 현안을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행지연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인 2005년 9·19 공동선언을 토대로 한 실천조치로서 2007년에 만들어진 2·13 합의와 10·3 합의의 골자는 북핵문제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풀어나간다는 것이었다: ① 핵시설 폐쇄(가동중단) 및 봉인, ② 핵시설 불능화(무력화), 신고 및 검증, ③ 핵무기 폐기. 즉 핵시설의 시동장치를 끄고 문을 걸어 잠그는 폐쇄 단계를 거쳐서, 북한의 핵활동 현황에 대한 신고와 불능화를 2007년 말까지 완료하고, 바로 핵무기 폐기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당초의 약속대로라면 벌써 핵폐기 단계에 진입했어야 하지만 전체적인 합의이행이 크게 지연되었다.

둘째,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의 불완전성이다. 신고는 당초 기한을 반년이나 넘긴 2008년 6월에야 이뤄졌고, 그 내용도 대단히 미흡하다. 신고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플루토늄에 대해서만 그것도 불완전한 신고를 했을 뿐이다. 2002년 제2차 북핵위기의 발단이었던 고농축우라늄 문제는 2009년 9월 3일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처음으로 그 실체를 인정했고, 2007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전모가 드러난 시리아 핵확산 문제에 대해서 북한당국은 아직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핵무기의

제조와 보유 현황에 관한 내용도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도 2008년 6월 26일 유감을 표명했듯이, 북한의 핵신고 내용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규정한 2·13 합의에도 위반되는 것이었다. 또한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신고 3월칙’(완전하고 정확하며 검증가능해야 함)을 충족시키지도 못했다. 특히 백악관이 2008년 4월 시리아 핵확산의 증거를 공개했고, 미국 국가정보국이 2008년 2월 5일자 『연례위협평가서』에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활동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 대해서 ‘중간수준의 신뢰’가 있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안이 신고대상에서 누락됨으로써 신고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불능화 역시 이행상황은 당초의 기대와 달리 크게 미흡하다. 2009년 4월 북한이 6자회담 거부를 선언하기 전까지 11개의 불능화 조치 가운데 8개가 완료되었고 3개가 진행 중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북한이 거부했다. 불능화의 정도와 관련해서, 당초 약속은 원상 복구하는 데 5년 정도가 필요한 엄격한 불능화였지만, 실제로는 복원에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불완전한 불능화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셋째, 신고내용의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검증을 통해 그 진위와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국제조약의 관례이자 기본상식이다. 그러나 북한은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검증은 별도의 보상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2009년 2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북한당국은 경수로 2기를 지어주면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검증에 대한 합의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2008년

7월 12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의 합의와 2008년 10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전에 북한과 논의한 구두합의이다. 구두합의는 북한이 합의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떠나가는 부시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검증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① 시설방문, ② 문서검토, ③ 기술자 면담. 그러나 이 원칙은 대북협상과 사찰의 기본을 망각한 잘못된 합의이다. 특히 시설방문이란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 통상 ‘방문’이란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집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검증활동 자체가 북한의 의도에 좌우될 수 있는 맹점을 안고 있다. 미국 협상팀이 지난 1990년대 대북 핵사찰 협상의 노하우를 알고 있었다면 이런 식의 합의는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92년 11월 당시 최우진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방문’은 허용하지만 ‘사찰’은 안된다고 하면서 IAEA 특별사찰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따라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포함해서 강력한 사찰을 실시하려면 ‘시설방문’은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잘못된 합의였다.

결국 6자회담이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합의된 검증체계로는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개발활동의 전모를 밝히기에도 역부족이다. 이런 정도의 검증이라면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검증 3원칙”(전면적이고 완전하며 만족할만한 검증)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당초 ‘5 對 1’의 구도를 기대했던 6자회담에서 실제로는 북한이 의제를 선점하고 협상과 이행을 주도해 나갔듯이, 검증협상도 북한에 의해 끌려 다닌 형국이었다.

넷째, 북한 비핵화의 장래가 불확실해졌다.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

표이자 우리의 숙원인 북핵폐기가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당국자들은 부실한 신고와 불능화에 대한 비판이 일자, 신고와 불능화가 다소 불완전해도 2008년부터 핵폐기에 진입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2008년 핵폐기 가능’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북한이 3차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보다 더 파괴력이 있는 협상자산을 추가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그만큼 신속한 핵폐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나. 북한의 제2차 핵실험

6자회담이 당초의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오전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6년 10월 9일 1차 실험을 한 후 2년 7개월 만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4.7, 우리나라 기상청은 규모 4.5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인공지진이란 자연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지진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지진 규모의 폭발을 야기한 상태라는 의미인데, 핵실험 이외에 지진에 버금가는 파괴력 있는 인공지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체적으로 2차 핵실험은 규모 2~4KT의 성공적인 실험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이번 실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된 성공적인 실험이었으며 앞으로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평가했다.<sup>1</sup> 아울러 이번 핵실험 성공으로 강성대국

<sup>1</sup> 『조선중앙통신』, 2009년 5월 25일.



의 문을 열기 위한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어 왔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매체를 동원해서 남한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2009년 1월 30일 조평통이 “남북 간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를 선언했고,<sup>2</sup> 1월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포했으며<sup>3</sup>, 보름 뒤인 2월 2일 남한과 동북아 주둔 미군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핵을 폐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sup>4</sup>

핵실험을 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를 복원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이후 더욱 격화되었다. 4월 14일 북한 외무성은 의장성명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6자회담을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불능화되었던 핵시설을 원상복구함과 아울러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up>5</sup> 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도 유엔의 제재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위적 조치의 일환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sup>6</sup> 5월 8일 외무성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부시 행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실망을 표시하면서 “이미 밝힌 대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

2. 『조선중앙통신』, 2009년 1월 30일.

3. 『조선중앙통신』, 2009년 1월 17일.

4. 『조선중앙방송』, 2009년 2월 2일.

5.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14일.

6.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29일.

다.<sup>7</sup> 핵실험 1주일 전에는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브루킹스연구소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sup>8</sup> 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2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북한정권이 의도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sup>9</sup> 첫째, ‘강성대국’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자 김정일이 70세가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또한 김정일이 원수로 추대된 지 20주년, 당 총비서로 추대된 지 15주년, 조선인민군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북한이 문을 열겠다는 강성대국의 실체가 4월 5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5월 25일 핵실험으로 분명해졌다. 김정일 정권이 얘기하는 강성대국이란 주민을 배불리 먹이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군사강국을 뜻한다. 2차 핵실험 직후 발표된 조선중앙통신 보도도 “이번 핵실험 성공으로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한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게 되었다”고 선언한바 있다.

둘째, 3대 부자세습을 위한 대내용 유산 부풀리기이다. 2008년 8월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이후 북한은 2012년을 목표로 세습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이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제 북한도 핵과 미사일을 갖고 강대국과 상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북한주민들의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자

7. 『조선중앙통신』, 2009년 5월 8일.

8. Michael Mullen, *The Future of Global Engagement*.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May 18, 2009), pp. 38~39.

9. 전성훈, “북한 핵보유 의지 확인과 대외협상 및 위협용,” 『북한』, 통권 451호 (북한연구소, 2009), pp. 24~32.

극함으로써, 2009년 4월 9일 출범한 김정일 3기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3대 부자세습 과정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업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정권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주민설득용 ‘유산 부풀리기’이자 ‘업적 쌓기’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 후계구도 안정화를 위한 대외 협상용이다.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대미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핵·미사일의 확산 금지를 약속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와 정치·외교적 승인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 즉 핵·미사일 강국으로 부상하여 정치·외교·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한 국가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해당 무기를 무조건 포기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정권은 일단 개발을 완료해놓으면 미국도 어찌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넷째, 무기체계 개발을 완수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동기이다. 2006년 10월 9일 당초 TNT 4KT의 파괴력을 목표로 했던 1차 핵실험은 1KT 미만의 폭발력으로 부분성공에 그친 미완의 핵실험이었다. 따라서 추가 핵실험을 통해서 무기체계 개발을 완성할 필요가 있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기를 만들어야만 억제력과 협상력이 동시에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2차, 3차 핵실험은 과학기술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무기체계의 개발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돈만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개발을 시작하면 자체의 모멘텀도 생기게 마련이다.

다섯째, 대남압박 및 위협용이다. 2차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대남전략의 일환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긴장을 고조시켜 남한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 남한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국 남한정부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하도록 만들기 위한 정치·군사적인 압박카드인 셈이다.

##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2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북핵위협에 대비해서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물론 핵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적·물질적·인적구조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비핵화를 한다고 해서 북한에게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한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믿음을 준다면 비핵화 과정에서도 ‘경수로’(Light Water Reactor: LWR) 건설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행태를 감안할 때,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발가벗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믿기는 어려울 것

I

II

III

IV

이다.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북핵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한국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역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 둘째, 군사력을 사용한 강압적인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는 것은 곧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북한과 주변 4강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한반도에서의 큰 전쟁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대안은 협상에 의한 ‘협력적 핵폐기’(cooperative nuclear dismantlement)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김정일 정권의 핵포기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협력적 핵폐기도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이 생존전략을 크게 수정하거나 북한 내에서 친서방 성향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경우에 또는 남한 주도의 평화통일이 달성되는 경우에는 협력적 핵폐기가 가능할 것이다. 즉 북한정권은 미련이 남더라도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협력적 핵폐기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대남도발을 하거나 핵확산을 자행하는 경우 또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해서 핵무기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강제적인 핵포기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제적인 핵포기의 중점은 소규모 군사충돌을 무릅쓰고 군사작전을 감행해서 핵무기 및 관련 물질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술적·물질적·인적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강제적 핵포기의 경우에도 나중에 자발적 핵포기의 경로를 밟아 남아있

는 기술적·물질적·인적 구조에 대해서 ‘협력적 핵폐기’를 통한 비핵화 과정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핵문제는 이제 남북한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국제화가 되어버렸다. 1990년대 초반에 남북한이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지만, 그동안 드러난 북한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감안할 때, 남북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성공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북핵문제의 국제화는 당사자와 의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관련국이 주변 4강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에서 보듯이, 의제도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까지 확대되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북핵문제의 국제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함의를 경계해야 한다. 의제의 다양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6자회담이 가진 본래 목표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주변 강대국의 참여로 한국의 발언권이 약화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우리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재는 한·미의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의 국제화가 야기하는 부정적 여파를 예방하고 한국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북한 비핵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장래까지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를 완수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한다. 양국 정부가 모두 핵비확산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 비전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있다. 북핵폐기를 통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진일보라는 점에서, 한·미 양국

은 북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결국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과 공조는 시대적인 요구이자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에 대비한 한·미협력의 기본전제는 북핵폐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2차 핵실험 이후 김정일 정권이 생존하는 한 자발적인 핵포기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9월, ‘G20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온 세계가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sup>10</sup> 북핵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은 한국이 앞으로 상당기간 북한 핵과 공존해야 한다는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북한 핵능력에 대비해서 한국의 안보를 증진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 방안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안보증진을 위한 협력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 추진시의 협력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 북핵문제와 한·미관계를 다루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한국의 안보증진과 북한 비핵화 모두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난 시기와 현재의 한·미관계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의 한·미관계가 드러낸 많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명박 정부 들어

---

<sup>10</sup> 이명박 대통령 AP, 로이터, 다우존스 공동 인터뷰. 『연합뉴스』, 2009년 9월 27일.

양국 관계가 복원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Ⅲ장에서는 북핵폐기가 완료될 때까지 한국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한·미의 협력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한·미가 공동 대처해야 할 북한의 핵위협이 어느 정도인가를 진단했고, 미국이 인도·파키스탄의 핵보유를 허용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한국 안보공약인 ‘핵우산’(nuclear umbrella)의 성격과 한계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보유에 대응해서 최근 일본학계와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을 소개했다. 이상의 분석과 기타 몇 가지 고려사항을 토대로, 북핵을 억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한·미 간 전략적 협력방안을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제Ⅳ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협력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북한 비핵화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소련에서 실시된 ‘협력위협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의 경험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북핵폐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했다: 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시나리오, ②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비용부담, ③ 북핵폐기의 추진방식과 북한 과학기술자의 직업 전환문제. 이상의 분석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I

II

III

IV





## II.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 1. 노무현 정부의 한·미관계

전통적인 우방 간에 주요 현안에 대해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아무리 우방이라 하더라도 각국 정부는 자기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간에도 지난 반세기 간 여러 부분에서 많은 차이와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극명하게 부각된 양국 간의 시각차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sup>11</sup>

첫째, 한·미동맹의 최우선 목표인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해 온 북한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임으로써 동맹의 존재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둘째, 역시 한반도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로서 북한 핵문제가 야기하는 안보위협과 그 해결방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촛불시위가 보여준 한국 내 반미정서와 한국의 반미 분위기에 자극 받은 미국 내 반한정서가 충돌했다. 넷째, 이상의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주한미군의 재편논의가 가속화되었다.

### 가.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햇볕정책의 골격을 그대로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연계정책’(engagement policy)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와는 크게 차별화되었는데, 온건한 인사로 알려진 파웰

<sup>11</sup>-Cheon Seongwhun, “North Korea and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rmed Forces & Society*, Vol. 34, No. 1 (October 2007), pp. 5~25.

국무장관조차 상원 인준청문회 증언에서 다음과 같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sup>12</sup> 첫째,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을 구시대의 잔재인 독재자라고 명시했다. 둘째, 럽스펠드 국방장관과 협의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sup>13</sup> 셋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 위협을 제거하는 데 진전이 없다면, 북한에게 어떠한 것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지도부에 대해 갖고 있던 강경하고도 확고한 인식은 그의 2002년도 연두교서와 서울방문 연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묶어서 “악의 축”(an axis of evil)이라고 규정하는 등 북한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 세계의 테러지원 정권들이 대량살상무기로 미국과 우방국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국가목표로 제시하면서, 북한과 이란, 이라크가 이런 정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있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이 “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것은 북한주민을 굶주림에 허덕이게 만드는 북한정권이라고 못박으면서, 김정일 정권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자신의 발언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반면에 독재체제에서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는

---

12. Colin L. Powell, “Statement of Secretary of State-Designate Colin L. Powell,” prepared for the Confirmation Hearing of the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January 17, 2001. <<http://www.iraqwatch.org/government/US/State/powell-prep-test-confirm.htm>>.

13. 파월 장관이 인준청문회에서 “철저하게”라는 단어를 써 가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안보7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문제뿐이다.

동정을 금할 수 없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정권이 어떻게 나오던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북한정권과 주민 차별화 전략’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다.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이 추구하는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은 북한정권과 주민 모두를 도와줌으로써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정권과 주민 동일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미국 시사주간지와와의 회견에서 “북한을 범죄자가 아닌 협상 상대로 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sup>14</sup> 이런 견해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부시 대통령의 견해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다. 양국의 정상들이 북한정권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근본적인 시각차는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지속되면서 한·미관계 악화의 핵심요인이 되었다.

## 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을 밝혀 왔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지만,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제공할 의사도 표명했다.<sup>15</sup> 북한의

<sup>14</sup>- George Wehrfritz, “Behind the wheel,” *Newsweek*, March 3, 2003, p. 13.

<sup>15</sup>-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

핵능력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실체가 존재하는 위협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sup>16</sup>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취임 초기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가 당장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북한정권이 원하는 당근을 제공하면 북한이 결국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경우 북한이 완성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시도 자체가 지역의 안정과 국제평화에 최대위협이라는 확고한 입장이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이 가입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을 두 번씩이나 위반하고 결국 탈퇴한 북한의 핵개발 야욕 자체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북한이 핵모험을 계속하면 할수록 북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북한 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인식은 특히 부시 행정부 1기에서 매우 강했다.

부시 행정부는 핵문제 해결방식에 대해서도 한국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의무이행과 당근제공을 교환하는 전례를 답습하지는 않겠다는 강한 의지하에, ‘거래’ 형식보다는 원칙과 규범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정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가졌다.

---

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라면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와 ‘체제 안전 및 경제지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sup>16</sup>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동아일보』, 2003년 2월 20일.

한편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이라크에 버금가는 강력한 사찰과 검증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미 부시 행정부 출범 초에 뚜렷했던 대북 ‘불신’과 ‘의혹’은 북한과의 모든 합의과정에서 검증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했다. 2001년 1월 하순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합의는 말의 성찬이 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sup>17</sup> 부시 대통령도 2001년 6월 북·미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 철저한 검증이 기본합의문의 이행과 미사일 협상의 전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북한이 과거와 단절하고 장래에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적절한 검증방안의 수용 여부라고 밝히기까지 했다.<sup>18</sup>

이런 의견이 모여져 나온 대북 핵검증 원칙이 바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원칙이다. 완전하다는 것은 과거 제1차 북핵 위기 때의 제네바 합의와 같이 북한의 핵활동을 동결하는 선에서 그치거나 미진한 부분을 후일의 해결과제로 남겨두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시 볼튼(John Bolton) 미 국무부 차관은 완전한 폐기를 이루기 위해서 플루토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HEU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sup>19</sup> HEU 문제에 대해서 북

<sup>17</sup> 『조선일보』, 2001년 1월 29일.

<sup>18</sup> Henry Hyde's Speech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ashington, D.C., March 13, 2001. <<http://www.nautilus.org/napsnet/dr/index.html#item2>>.

<sup>19</sup> John R. Bolton, "The Bush Administration's Nonproliferation Policy: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Testimony before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March 30, 2004. <[http://www.nti.org/e\\_research/official\\_docs/dos/dos03302004\\_bolton.pdf](http://www.nti.org/e_research/official_docs/dos/dos03302004_bolton.pdf)>.



한은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면 기술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sup>20</sup> 그러나 미국은 플루토늄보다 훨씬 숨기기 쉬운 HEU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북한의 은닉행위를 도와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sup>21</sup>

검증가능하다는 것은 북한당국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대북 불신에 바탕을 두고, 합의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은 북한이 다시 핵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술적 하부구조와 능력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북한에서 핵의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볼튼 차관에 따르면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도 포기하고 관련사항을 모두 제거해야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sup>22</sup>

미국이 CVID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을 발본색원하려는 중요한 이유는 이라크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은 걸프전 이후 핵·화학·세균무기 개발을 완전히 금지하는 유엔제재와 사찰로 인해서 이들 무기의 개발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증거를 찾는 데 애를 먹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 150km까지는 개발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후세인 정권은 이를 악용해서 북한 등으로부터 중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했다.<sup>23</sup> 따라서 북

---

20. 2004년 3월 10일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2004년 3월 11일.

21.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처드 루가 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답변, 2004년 3월 2일, <[www.ifins.org/pages/kison-archive-kr545.htm](http://www.ifins.org/pages/kison-archive-kr545.htm)>.

22. John R. Bolton, "The Bush Administration's Nonproliferation Policy: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23. James Risen, "Russian engineers reportedly gave missile aid to Iraq," *New*

한이 더 이상 핵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CVID의 요체이다.

## 다. 반미감정과 반한감정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가져온 대표적인 변화가 반미정서의 공개적인 표출이다. 국민의식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그동안 국민일반의 정서에 잠재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미국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식이 하나의 공개된 여론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반미정서는 그 뿌리가 깊고 넓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주한미군과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보여준 일부 행위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인에 대한 주한미군의 범죄 행위에 대해 한국정부가 사법권을 행사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주한미군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환경문제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sup>24</sup> 한국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받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문제들이 SOFA 개정과 주한미

---

*York Times*, March 5, 2004;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정보수집능력을 비판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미 상원 정보위원회도 북한과 이라크 사이에 미사일 기술 거래시도가 있었다는 정보는 신뢰했으며, 2001년 3명의 이라크 장교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당시 북한에 머물던 시리아의 미사일 팀과 만났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Dana Priest and Dafna Linzer, "Panel condemns Iraq prewar intelligence," *Washington Post*, July 10, 2004, p. A01; 상원정보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Report o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s Prewar Intelligence Assessments on Iraq," Washington, D.C., July, 2004.

<sup>24</sup> 『동아일보』, 2003년 3월 4일.

군에 대한 재교육, 상호이익을 고려하는 균형잡힌 계약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동안 한국사회에 축적된 반미정서를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2002년 발생한 동두천의 여중생 사망사건은 이런 반미정서를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의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독립심 강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주권 확립 욕구가 한·미 동맹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한 일련의 미국 관련 발언들도 미국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반미정서를 잠재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25</sup>

한국 내의 반미감정은 그에 상응해서 미국 내의 반한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뉴욕타임지와 워싱턴포스트지 등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2002년 말부터 한·미관계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기사를 실었다. 뉴욕 타임지의 칼럼니스트 새파이어(William Safire)는 2002년 12월 26일자 칼럼에서 “미군이 북한의 보복공격의 인질로 잡혀있지 않다면 미군의 군사작전 재량권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군은 “그 나라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있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뉴욕타임지는 2003년 2월 11일자 사설에서도 한·미관계가 확실히 긴장되어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

<sup>25</sup> 노무현 대통령의 다음 발언들을 예로 들 수 있다: ①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공조와 관련, “미국과 견해가 다른 것은 달라야 한다”(2월 13일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 ②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미국과]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다”(2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③ 북한의 미군정찰기 위협사건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촉구했다”(3월 5일 영국 더 타임스 회견), ④ 북한 핵문제 조율과 관련, “한·미의 입장이 똑같을 수 없는 상황에서 걸음은 이견이 없는 것처럼 쉬쉬하며 가느냐, 공개적으로 이견을 나타내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있다. 세계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3월 9일 민주당 지도부 만찬회동).

의 대미 특사단도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BS 방송의 '60 Minutes'에서는 한국의 시위대가 성조기를 찢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미8군사령관의 모습을 방영해서 미국 내 여론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새파이어는 3월 10일자 칼럼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은 우방이지만 한국은 중립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한·미관계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sup>26</sup>

미국 내의 반한감정은 정가와 일반사회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미 공화당의 론 폴 하원의원은 2003년 2월 13일 미국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20억 달러나 쓰고 있지만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및 대한 방위공약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상하원 의원들이 한·미 동맹관계에 회의를 표시하면서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기도 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들도 반한감정에 대해 매우 걱정했다. 한인경제가 위축될 뿐 아니라 한인들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이 당했던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 라. 주한미군 재편문제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를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재편문제가 노무현 정부하에서 우리 당국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주한미군의 재편문제는 일찍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어 왔던 일이다. 지난 1990년대 초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3단계 미군 철수안이 계획되었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계획이 백지화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아

<sup>26</sup>- William Safire, “The Asian front,” *New York Times*, March 10, 2003.

버지 부시의 대외전략을 상당부분 답습하고 있는 현 부시 행정부에서도 유사한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은 오래 전부터 첨단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늘리는 대신에 해외전진배치의 비중을 줄이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한·미 양국은 2003년 말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규모를 조정하는 계획을 2004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를 조기에 실시하지는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국방부가 크게 당황했었다.<sup>27</sup> 특히 럽스펠드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전편 재편을 예고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2003년 3월 7일 국방부 직원들과 가진 모임에서 럽스펠드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전방에 너무 가깝게 배치되어 있어서 한국 국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고 병력의 융통성 있는 운용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일부 병력의 귀국과 남쪽으로의 이동 및 다른 나라로의 재배치를 구상중이라고 밝혔다.<sup>28</sup>

주한미군 재배치를 우려하는 여론이 고조되자 당시 고건 국무총리는 허바드 주한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sup>29</sup> 대북 전쟁억지력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되고, 전쟁발발 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소위 ‘인계철선’(Trip Wire)이 유지되어야 하며, 북한 핵문제로 민감한 현재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건 국무총리의 발언은 주한미군 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한·미 안보동맹은 굳건하

---

27. 2003년 2월 27일 내한했던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주한미군 재편안을 2003년 9월까지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조선일보』, 2003년 3월 4일.

28. 『조선일보』, 2003년 3월 7일.

29. 『동아일보』, 2003년 3월 7일.

계 유지되어야 하며,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현재는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많은 한국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은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고진 국무총리의 원칙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와는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핵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계철선의 유지를 바라는 것은 모순된다는 인식을 했을 수 있다.

## 2. 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

### 가. 동맹관계의 복원

노무현 정부에서의 한·미관계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놓친 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앞에서는 자주를 내세우면서도 뒤에서는 미국에 많은 양보를 했다는 사실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확대해석하고 더 크게 벌려 놓았으며, 부분적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었고 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관계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미 양국 사이에 동맹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단탄한 합의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존재이유가 북한이라는 실제적인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핵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확고한 공동인식을 갖고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 넷째, 한·미동맹은 청산해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소중한 역사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시, 오바마 대통령과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이 남긴 과제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한·미관계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회담이었다.

2008년 4월 19일 부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동맹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 추가철수 동결 등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입증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도출했다.<sup>30</sup>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에 대해 양국 정상은 이해를 같이 한 것도 성과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일단 북한의 신고를 받아들여, 신고의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북한정권의 의도를 확인하겠다는 엄정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북한 핵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인식을 갖고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며 핵포기를 설득하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발언했고,<sup>31</sup> 북핵 포기는 바로 북한주민들의 삶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

---

<sup>30</sup> “President Bush participates in Joint Press Availability with President Lee Myung-bak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8/04/20080419-1.html>, April 19, 2008>.

<sup>31</sup> “South Korean President discusses U.S.-South Korea relations,” *Washington Post*, April 17, 2008.

북정책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표명함과 동시에 대북 대화제의도도 병행하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북정책의 균형을 잡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회담의 결과로 ‘공동비전’(joint vision)을 채택했다.<sup>32</sup> 공동비전에서 양국은 지난 50년 간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온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양국 안보관계의 초석임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양자·지역·국제적 차원의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동맹이 21세기 전략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으며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로 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를 달성하고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런 점에서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빨리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sup>33</sup> 오바마 대통

<sup>32</sup>-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June 16, 2009.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Joint-vision-for-the-alliance-of-the-United-States-of-America-and-the-Republic-of-Korea](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Joint-vision-for-the-alliance-of-the-United-States-of-America-and-the-Republic-of-Korea)>.

<sup>33</sup>-『연합뉴스』, 2009년 6월 16일.



령도 과거에는 북한이 호전적으로 행동을 하고 오래 기다리면 그런 도발행위에 대한 보상이 있었지만 미국과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그런 패턴을 깨자는 것이라고 밝혔다.<sup>34</sup>

## 나. 향후 과제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에 제시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21세기 전략동맹 구축’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전략동맹 구축’은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시간을 두고 양국 실무진들이 계속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세계 운용전략에 익숙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전략적 관점’에 익숙하지 않으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전략동맹의 한 축으로 제시된 ‘가치’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세분화된 다른 가치의 경우에는 주변 강대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 분쟁을 둘러싸고, 미국의 ‘대만 보호’ 가치와 중국의 ‘내정불간섭’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한·미 간에도 세부적 사안에서 이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핵문제의 해결방식과 해법을 둘러싼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 양자회담 불가’라는 당초의 입장에서 ‘6자회담 내 양자회담 가능’을 거쳐 ‘6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양자회담 수용’으로 계속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 한국 내에서 일말의

---

<sup>34</sup>- *Ibid.*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35</sup> 우리정부는 6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북·미회담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북·미회담이 6자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이 될지, 아니면 6자회담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도구가 될지는 향후 회담의 전개과정을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초 6자회담을 공식 거부했던 김정일이 북·중수교 60주년을 맞아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북·미회담 상황을 지켜보면서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sup>36</sup> 6자회담 부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굳이 다자회담을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6자회담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이다.<sup>37</sup>

한국정부 관리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서, 미국정부는 고위 관리들의 발언과 공식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09년 10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고,<sup>38</sup> 2009년 9월 24일 개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도 실제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확인된 첩보는 없다고 말했다.<sup>39</sup> 반면에 2008년 후반부터 미국 관리

35-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와의 의견교환, 2009년 9월 30일.

36- 『연합뉴스』, 2009년 10월 6일.

37- 2009년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다이빙귀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최근 방북결과를 설명하고 “전반적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 혹은 어떤 형식으로든 다자회담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각국이 노력한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09년 9월 24일.

38- 『동아일보』, 2009년 10월 6일.

39- 『조선일보』, 2009년 9월 25일.

들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는 것은 정치적 혹은 국제법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사소한 차이도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하게 조율하는 것이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정책공조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미 외교방향이 ‘한·미동맹의 복원·강화’를 지향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훼손된 양국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노무현 정부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한·미관계를 단순하게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만 간주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보다 건설적인 자세는 노무현 정부의 유산을 향후 새로운 대미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보다 국제적 접근을 지향하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야기한 정책실패에 대한 역작용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바람직하다. 다만, 통일문제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고려할 때, 남북관계를 한반도 및 지역차원의 문제와 관련된 대외협상에서 우리의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남북관계도 국제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규범의 틀 속에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은 한·미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간 정부가 보여준 남북대화의 타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의 타성이란 남북대화 개최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고, 남북대화가 중단되면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이 우려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퍼져있

는 현실을 말한다. 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에 참석한 김기남 비서 등 북한 조문단의 청와대 예방요청을 수용은 하되,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외국의 조문사절들을 접견하는 연장선상에서 만난 것은<sup>40</sup> 북한의 대남 전략의 예봉을 꺾으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상식과 규범을 남북관계에 적용한 매우 훌륭한 사례이다.

우리 속담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의 한·미관계는 지난 시기에 겪었던 소원함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통적인 혈맹의 관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있었던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 결과가 이런 희망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만든다. 사실 관계가 소원했던 시기에 한·미 양국은 모두 동맹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자기반성과 재평가의 시간을 가졌었다. 지난 시기에 있었던 동맹관계의 위축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의 발전과 재도약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40. 『동아일보』, 2009년 8월 24일.



### Ⅲ. 북핵폐기 이전의 한·미 안보협력





## 1. 북한의 핵위협 평가

플루토늄의 양을 기준으로 할 때, 2009년 말 북한의 핵능력은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여, 약 5배 정도 신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 중반에는 핵무기 제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재처리된 플루토늄이 7~12.5kg에 불과했지만, 2009년 말 현재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하고도 남은 양이 32.5~58.5kg으로 추정된다.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도, 북한의 핵능력은 약 5배 정도 증강되었다. 북한의 핵탄두 제조기술이 초급수준인 경우, 1990년대 중반에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개수는 1~3개 정도로 추산되지만, 2009년 말 현재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개수는 5~15개로 늘어났다. 만약 북한이 중급수준의 핵탄두 제조기술을 보유했다면, 1990년대 중반에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개수는 2~5개 정도로 추산되지만, 2009년 말 현재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개수는 9~23개로 늘어나게 된다. 북한의 핵능력을 주요 요소별로 분석하고 핵탄두 제조 기술 수준별로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개수를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

I

II

III

---

IV



## 가. 1990년대 중반의 핵능력

표 III-1 주요 요소별 북한의 예상 핵능력(1990년대 중반)

핵물질(kg)			무기화			북한의 핵확산	
플루토늄		HEU	설계·제조·고폭실험	핵실험	소형화·경량화		
IRT-2000 원자로	2~4	- 1993년 12월 부토 수상의 평양방문 이후 파키스탄과의 HEU 협력 시작	- 제1기 (1983~1994.10)에 70여 회의 고폭실험 실시	- 미실행	- 소형화·경량화 능력 없음. - 1945년 나가사키에 투하된 초보적인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	- 핵확산 행위 없음.	
5MWe 원자로	1986.1~1989.4						5~8.5
	1989 여름~1994.4						재처리 미실행 (17.5~27)
생산된 플루토늄 총량: 24.5~39.5 ↓ 재처리된 플루토늄 총량: 7~12.5 ↓ 핵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플루토늄 총량: 7~12.5							

● 표 III-2 초급기술 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 (1990년대 중반)

파괴력/ 필요한 Pu양	5KT/4kg	10KT/5kg	20KT/6kg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수 (개)	2~3	1~2	1~2
	0~2	1	-
	-	0~1	1
	0~1	-	1

● 표 III-3 중급기술 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 (1990년대 중반)

파괴력/ 필요한 Pu양	5KT/2.5kg	10KT/3kg	20KT/3.5kg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수 (개)	3~5	2~4	2~3
	0~2	1	1
	0~2	2	-
	-	0~2	2
	0~2	-	2

I
II
III
IV

## 나. 2009년 말의 핵능력

표 III-4 주요 요소별 북한의 예상 핵능력(2009년 말)

핵물질(kg)		무기화			북한의 핵확산	
플루토늄	HEU	설계·제조·고폭실험	핵실험	소형화·경량화		
IRT-2000 원자로	2~4	- 일정량의 UF6를 획득, 소량의 HEU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 제1기(1983~1994.10)와 제2기(1997~2002.9)에 각각 70여 회 등 모두 140여 회의 고폭실험 실시	-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하갱도에서 제1차 핵실험  - 중국에 통보한 1차 핵실험 규모는 4KT  - 2009년 5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제2차 핵실험  - 2차 핵실험의 추정규모는 2~4KT	- 소형화 능력을 갖추.  - 경량화에는 기술적인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	- 2000년 대 초부터 시리아에 핵물질과 핵기술을 이전, 2003년경부터 원자로 건설  -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건설하던 원자로를 폭격하여 제거
1986.1~1989.4	5~8.5					
1989 여름~1994.4	17.5~27					
2003.2~2005.3	8~12					
2005.6~2007.7	8~12					
생산·재처리된 플루토늄의 총량: 40.5~63.5						
2006.10.9 핵실험 사용량 (추정)	- 2.5~4					
2009.5.25 핵실험 사용량 (추정)	- 2.5~4					
↓ 핵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플루토늄 총량: 32.5~58.5						

● 표 III-5 초급기술 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 (2009년 말)

파괴력/ 필요한 Pu양	5KT/4kg	10KT/5kg	20KT/6kg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수 (개)	8~15	7~12	5~10
	5~12	1	1
	6~12	2	-
	-	4~9	2
	5~12	-	2

● 표 III-6 중급기술 수준의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탄두 (2009년 말)

파괴력/ 필요한 Pu양	5KT/2.5kg	10KT/3kg	20KT/3.5kg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수 (개)	13~23	11~20	9~17
	8~18	2	2
	8~19	4	-
	-	6~15	4
	7~18	-	4

## 2. 인도·파키스탄 사례의 부정적 함의

부시 행정부하에서 미국과 인도, 미국과 파키스탄 사이에 진행된 핵관련 협력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두 사건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준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도와의 협력은 평화적 이용분야의 원자력 협력이었고, 파키스탄과의 협력은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를 지

I
II
III
IV

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군사적 분야의 협력이었다. 핵비확산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이지만 부시 행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전략적 요소들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1998년 인도의 핵실험을 비난하며 제재를 가했던 부시 행정부가 인도와 원자력 협력을 추진한 중요한 이유는 대중국 견제, 대테러 전쟁수행에서 인도가 갖는 전략적 가치,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 등 다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은 2005년 7월 18일 『지구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미·인도 공동성명』에서 평화적인 원자력 협력방침을 선언한 이래<sup>41</sup> 양국 내부의 논란과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서 2006년 3월 『미·인도 평화적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8년 10월 8일 상하 양원을 통과한 『미·인도 원자력 승인과 비확산 증진 법안』(U.S.-India Nuclear Cooperation Approval and Non-Proliferation Enhancement Act)에 서명함으로써 인도와의 원자력 협력을 법제화했다. 양국 간 협력의 골자는 인도의 핵보유를 용인하되 민수용과 군수용 핵시설을 분리해서 민수용 시설에 대해 IAEA 사찰을 받도록 하고, 그 대신 인도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을 수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 대한 핵기술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의 수출통제지침을 바꿔야만 했다. 원자력 기술 선진국들의 모임인 NSG에서는 인도와 같은 NPT 비원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가 NPT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범세계적 핵비확산 체제를 크게 훼손했기

---

<sup>41</sup> 전봉근, “미-인도 원자력협력 동향과 주요 쟁점,”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7.9.19)

때문에 미·인도 원자력 협력은 NSG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인도에 대한 원자력 수출을 노리는 일부 회원국들의 상업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강력한 설득으로 NSG가 인도에 대한 수출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수출통제 지침을 변경했다.

한편 부시 행정부가 파키스탄과 군사분야의 핵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9·11 테러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국제안보환경 때문이다. 탈레반을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던 부시 행정부로서는 파키스탄의 군사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고,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관계복원을 미루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반면에 파키스탄의 내정이 불안하고 파키스탄 군 및 정보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탈레반 세력이 파키스탄 내부로 침투해들어 오면서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무기나 핵물질이 탈레반이나 다른 불순 세력에 의해 탈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제기되었다.<sup>42</sup> 결국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재를 가했던 미국은 핵보유를 인정한 것은 물론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까지 해주었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1억 달러 정도를 파키스탄에 쏟아 부었다.<sup>43</sup> 미국이 파키스탄의 안정을 중시하는 원인은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파키스탄이 테러의 온상이라는 사실 때문이다.<sup>44</sup>

42. 특히 파키스탄 내정이 불안해지면서 2009년 들어 파키스탄 핵무기의 탈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David Sanger, "Obama's worst Pakistan nightmare," *New York Times*, January 11, 2009; George Jahn, "Analysis: infiltration greatest Pakistan nuke risk," *Associated Press*, May 4, 2009.

43. David Sanger and William Broad, "U.S. secretly aids Pakistan in guarding nuclear arms," *New York Times*, November 18, 2007.

44. Richard Haass, "In the Afghan war, aim for the middle," *Washington Post*, October 11, 2009.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는 북한정권의 전략과 사고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

#### 가. 핵보유를 통한 체제유지의 자신감 확보

북한 지도부는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이 핵능력을 결정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위치를 점유하거나(인도, 대중국 견제용으로 활용)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파키스탄,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 경우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동시에 미국이 북한체제를 전복하려는 기도를 포기하면서 관계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믿음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핵을 자산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면서 동북아 정세를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도하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 나. 핵을 보유한 상태로 북·미관계 개선 추진

2006년 초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핵포기 거부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NPT 밖에 있는 북한과도 협력하자고 제의했는데, 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부시정권이 핵전파를 막기 위해서도 전쟁을 하고 테러방지를 위해서도 전쟁을 하며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도 전쟁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저들의 이념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적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들을 전복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밝힌 강도적인 선전포고 문건”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미국이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의 현실적 방도를 찾는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구태의연한 선 핵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전략적 견지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밖에 있는 우리와도 핵분야에서 협조하는 길로 나오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sup>45</sup>

전략적 가치나 정치체제, 핵확산 형태 등에서 인도와 북한 사이에는 객관적인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은 결코 인도처럼 대우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sup>46</sup> 북한정권은 부시 행정부의 원칙 바꾸기와 협상후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동북아의 인도나 파키스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2007년 3월 5일 뉴욕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담에서 북한을 인도처럼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sup>47</sup>

#### 다. 북한의 핵군축 입장 강화

미·인도 원자력 협력은 같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하게 양자간 핵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강화해주는 효과를 야기할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 선언한 2005년 2월 10일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인 3월 3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담화』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담화는 핵보유국임을 최초로 공식 선언한 김정일 정권이 앞으로 핵무기를 자산

45- 『조선중앙방송』, 2006년 3월 21일.

46- 전봉근, “미-인도 원자력협력 동향과 주요 쟁점,” p. 15.

47- 『조선일보』, 2007년 3월 28일.

I
II
III
IV



으로 구사하고자 하는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는 문건이다. 답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sup>48</sup>

1. 이제 와서 미국은 저들의 핵위협은 뒷전에 밀어놓고 우리만 핵무기를 내놓으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처럼 비핵화의 본질을 오도해 나르고 있다.
2.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남조선에서 미국의 모든 핵무기들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자체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야 한다. ... 이와 함께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일체 핵전쟁연습을 중지하고 핵위협 공간을 청산해야 하며 우리와 미국을 포함한 주변나라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3. 우리가 당당한 핵무기 보유국이 된 지금에 와서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되어야 한다.

이 답화는 북한이 NPT 체제 밖에서 핵개발에 성공했고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국의<sup>49</sup>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모델, 즉 신생 핵보유의 모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핵능력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핵능력을 보다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은 2008년 8월 26일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불능화와 핵시설 원상복구를 선언하면서 기존 핵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

48. 『조선중앙방송』, 2005년 3월 31일.

49. 편의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핵국’(nuclear weapon state),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핵국’(non-nuclear weapon state)이라고 부른다.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6자회담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 폐기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남한과 주한미군의 핵무기도 같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둘째, 검증도 북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해서 동등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남한 땅에 핵무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과거에 핵무기가 배치되었던 위치와 규모 등 핵무기 배치 역사에 대한 검증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셋째, 핵신고에 대한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북한만 검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10·3 합의에는 신고에 대한 검증이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검증 요구가 합의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는 북한이 6자회담을 보는 시각과 회담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 1990년대 초 핵문제를 협의하던 때부터 주장하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말한다. 즉 ‘비핵화’로 이름을 바꿨을 뿐, 핵을 자산으로 주한미군의 입지를 약화시키겠다는 북한의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핵폐기 단계에서 북한과 남한 및 주한미군에 대해서 동시에 동등하게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난 1990년대의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성명은 “6자회담을 통한 신속한 북핵폐기가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함몰되어서 북한의 장기적인 핵전략을 간과한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문건이다.

---

 I

II

III

 IV
 

---

## 라. 미국 핵비확산 정책의 신뢰 손상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보유는 인정하면서 북한이나 이란 등 다른 나라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미국의 정책이 ‘이중기준’과 ‘불공정성’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핵비확산 정책의 신뢰성에 큰 손상을 야기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기존의 NPT 체제를 바꾸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추구하며 북한과 이란의 평화적 핵이용 프로그램까지 압박하고 있으면서도 인도에 대해서는 핵기술을 판매하기로 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었다.<sup>50</sup>

## 마. 중국의 역대응 가능성

미국의 대인도 원자력 기술지원을 자국에 대한 봉쇄와 견제를 위한 세력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중국정부는 미·인도 원자력협력에 대해서 우려와 불쾌감을 표시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세력균형에 대한 대응차원의 조치로서 북한의 핵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한·미·일 3국에 대한 위협과 견제의 카드로 활용한다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어려워짐은 물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올러 북한은 미·인도 원자력협력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묵도하고 중국이 인도를 겨냥해서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지원했듯이(파키스탄의 핵탄두 설계는 중국형), 한·미·일을 겨냥해서 북한 핵을 용인할

---

<sup>50</sup>-Gordon Fairclough and David Crawford, “Emboldened Iran rejects nuke deal; Korean talks end,” *Wall Street Journal*, August 8, 2005.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중국정부의 입장을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6자회담의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중국이 6자회담의 중재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핵폐기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인식하고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국은 단순히 회담개최에 의미를 부여하고 더 이상의 상황악화만 방지하면서 현상이 유지되는 상태에 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 중국의 목표는 북핵폐기가 아니라 현상관리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나선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경 지도부가 허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북한의 행동이 과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카드를 흔들면서 미·일동맹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규제하는 데 기여하겠다는데, 중국이 극구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미·중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 지도부로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통제하는 데 한 몫 할 수 있다면 구태여 폐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동북아 안보문제의 근본 원인이자 이 지역의 경제대상 1호는 미국의 패권주의라는 점에 대해서 북·중 양국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

I
II
III
IV

---

### 3.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

#### 가. 핵억지전략과 핵우산

‘핵우산’(nuclear umbrella)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사해 온 핵억지전략의 일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에서 동·서 양 진영 간의 군사적 대치가 형성되는 가운데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진영의 재래식 전력이 서방을 압도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에서 선보인 핵무기의 위력으로 소련의 침공을 사전에 억지하겠다는 정책을 채택했다. 통상적인 ‘억지’(deterrence)는 적대국의 공격에 대해 재래식 전력으로 충분히 보복할 능력을 갖추므로써 공격을 예방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서 트루먼의 정책은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바탕으로 침략 당사국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겠다는 보복위협을 통해 억지를 달성한다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억지와는 구분되는 ‘핵억지’(nuclear deterrence) 전략의 초기형태였다.

핵우산은 핵억지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정확하게는 ‘핵확장억지전략’(nuclear extended deterrence strategy)이라고 부른다. 핵확장억지전략 혹은 핵무기가 사용되는 ‘확장억지전략’이란 적대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재래식 무기와 WMD로 공격하는 경우, 해당 적대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겠다는 보복위협을 함으로써, 적대국의 공격을 사전에 억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다. 즉 핵억지전략의 보호대상이 미국에서부터 동맹국으로 확대되고 핵억지력의 투사지역도 미 본토로부터 동맹국 영토로까지 확장된다는 의미이다.

핵우산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역지의 보호대상에 미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도 포함된다. 서독을 포함한 유럽의 NATO 동맹국들과 한국·일본 등이 핵우산의 구체적인 보호대상으로 적시되어 왔다. 둘째, 역지의 목표는 적대국의 재래식 공격과 핵공격을 포괄한다. 셋째, 역지의 수단에는 미국이 보유한 재래식 및 핵무기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핵우산은 미국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맹국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까지 억지하겠다는 미국의 대외 안보공약의 토대이다.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해외 군사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개념이기도 하다. 결국 핵우산과 핵확장억지는 같은 말로서, 핵우산이란 ‘핵확장억지전략’을 쉽게 표현하는 별칭에 불과하다.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에 열린 한·미 SCM에서 핵우산 대신 확장억지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두고 우리군 일각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된 해석이었다.

## 나. 핵우산의 법적 근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의 법적근거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미국이 동맹국들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인데,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미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보유를 포기한 비핵국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소위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 약속이다.

먼저, 한·미동맹의 경우 1978년 제11차 SCM부터 매년 회의 때마다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제공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합의문에 명시해두었다.<sup>51</sup> 미국의 핵우산 제공의사를 서면으로 보장받아 온 것이다. 한

I
II
III
IV

편, 2009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에 명시함으로써,<sup>52</sup>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미국이 비핵국들에게 제공하는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이란, NPT에 가입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비핵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기본정책으로 견지하는 가운데 특정한 경우에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는 뜻이다. 그 조건이란 비핵국가라 하더라도 다른 핵보유국과 동맹관계에 있거나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경우 해당 비핵국에 대해서는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을 철회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에 따르면, 핵보유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은 상기 예외조항에 의거해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보장하는 원칙적인 안전장치라면, 미국의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에 담겨 있는 예외조항은 핵우산 보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세계 9번째로 핵무기를 개발한 만큼 이러한 예외조항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핵을 가진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 이를 핵으로 보복·격퇴하는 데 국제법적인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sup>51</sup> 전호환,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에 대한 역사적 조명,”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여름호 (한국국방연구원, 2008), pp. 29~57.

<sup>52</sup>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흥미로운 것은 1978년 미 국무장관 밴스(Cyrus Vance)의 유엔연설로 정책화되기 시작한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이 현재는 중국을 제외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자리를 굳혔다는 사실이다. 1995년 4월 5일 러·영·불 3개국은 유엔총회에서 비핵국에 대한 핵보유국의 안전보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을 문안까지 그대로 답습하여 발표한 바 있다.

#### 다. 핵우산의 효과와 문제점

핵우산은 냉전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의 세력팽창과 전쟁유발 위험을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냉전종식 이후에도 특정국가에 대한 핵보복 위협은 해당국가의 도발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데 기여해왔다. 예를 들어, 1990년 걸프전쟁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에게 화학·세균무기를 연합군에게 사용할 경우 미국은 ‘가장 강력한 대응’(the strongest possible response)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핵무기 사용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부시의 경고가 후세인의 전쟁수행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있지만,<sup>53</sup> 미국의 핵보복 위협이 전쟁당사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까지 개발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핵우산의 효력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sup>53</sup>- Steve Fetter, "Limiting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Harold Feiveson, (ed.) *The Nuclear Turning Point: A Blueprint for Deep Cuts and De-Alerting of Nuclear Weap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9), p. 39.



그러나 지금까지 핵우산 정책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핵우산의 신뢰성 문제이다. 적대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공격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핵무기로 보복할 가치와 필요성이 똑같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어야만 핵우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우산이 제공되기 시작한 이후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에도 미국이 과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지속되어 왔으며, 이런 의문은 소련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더욱 거세어졌다. 그 이유는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격에 대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경우 미국 본토가 소련의 보복 핵공격 위협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뮌헨이나 영국의 런던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되는 경우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미국이 서울이나 부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혹은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이 초래하는 정치적, 도덕적 부담이다. 핵우산은 적대국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의 선제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 미국이 1945년 일본에 두 발의 핵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정치적, 도덕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군사안보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역대 미국 행정부의

안보전략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공세적인 전략을 채택한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안보상황이 핵무기의 선제사용에 따른 정치·외교적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소위 ‘핵무기 없는 세계’(nuclear-weapon-free-world)를 지향하면서 핵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비판도 있다.

## 라. 핵우산: 핵국과 비핵국의 타협

핵우산 개념을 둘러싼 한 가지 중요한 오해는 바로 핵우산이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이 그렇지 못한 약소동맹국에게 베푸는 안보적 시혜라는 인식이다. 여기에는 안보동맹을 책임지는 세계질서의 주관자로서 우방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강대국의 패권적 논리가 깔려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NPT라는 국제제도의 틀 속에서 핵무장 옵션을 완전히 포기한 많은 나라들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핵우산을 안보적 시혜의 관점에서 수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핵우산은 핵국과 비핵국간의 안보적 타협이다. 핵국이 동맹인 비핵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바로 해당 동맹국의 핵포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일 양국이 미국의 안전보장 혜택을 받는 대가로 핵무장을 포기한 것은 미국에게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라는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준다.<sup>54</sup> 즉 핵우산을 정점으로 한 핵국과 동맹국간의 관계는

I

II

III

IV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쌍방이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상생의 관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4. 북핵에 대한 일본의 대응

북핵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북핵을 빌미로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결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 MD) 구축에 진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는 궁극적으로 일·중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므로써 한·중관계와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일동맹이란 가면을 쓰고 추진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한국에게는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도 찬성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북한 핵에 핵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핵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 데, 일본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운용과 전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다른 하나의 축이다.

---

<sup>54</sup> 미국이 1978년부터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핵우산 제공을 최초로 명기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시도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인택, “동맹과 확장역지: 유럽의 경험과 한반도에의 함의,” 『EAI-JPI 동아시아 평화 컨퍼런스』 (동아시아연구원·제주평화연구원 공동 주최, 2009.9.11), p. 117.

## 가. 일본의 핵무장 논의 활성화

2009년 6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소 수상이 “북한 핵문제가 심각해지면 일본 내부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sup>55</sup> 정상회담에서 일본수상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 특이하지만, 사실 ‘북한 핵에 대응한 일본의 핵보유’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본은 1967년부터 핵무기를 “보유·제조하거나 반입시키지 않는다”(持たず, 作らず, 持ち込ませず)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도<sup>56</sup> 내부적으로는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주기적으로 해왔다. ‘비핵 3원칙’을 선포한 사토 수상도 핵무장에 대한 비밀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다.<sup>57</sup> 나카소네 전 수상이 방위청장관이던 1970년에 발표된 방위백서는 “소규모 전술상의 순수한 방어용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sup>58</sup> 헌법상 공격용 핵을 갖는 것은 어렵지만 자위를 위한 소규모 핵보유는 가능하다는 것이 일본 정·관계의 저변에 깔린 인식인 것이다.

두 발의 핵무기로 패전국이 된 일본국민들의 핵에 대한 저항감, 즉 ‘핵알레르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핵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지지하는 의견은 전후 일본사회에서 쉽게 표출되기 어려웠다. 평범한 일본국민

55- 『朝日新聞』, 2009년 7월 31일.

56- 1967년 사토(佐藤榮作) 수상이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비핵 3원칙을 선언했다. 佐々木芳隆, “核戦略の中の日本,” 坂本義和編, 『核と人間: 核と對決する20世紀』(東京: 岩波書店, 1999), p. 244.

57- 『朝日新聞』, 1994년 11월 13일.

58- Selig Harrison, “Japan to be medium-rank powe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ctober 21, 1970; 1980년도 방위백서도 나이키-허쿨리스 방공미사일과 203mm 유탄포와 같은 방어용 핵무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朝日新聞』, 1980년 10월 15일.

I
II
III
IV

들의 이런 인식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다.

1993년 5월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하면서부터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북한 위협론’이 일본국민들에게 먹혀들기 시작한 것이다. 1998년 8월 대포동미사일 시험은 ‘북한 위협론’이 일본사회에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었고, 2006년의 1차 핵실험으로 ‘북한 위협론’은 활짝 꽃을 피웠다. 2009년 4월 5일 북한이 3차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 전역이 비상상태였지만 일본국민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오죽하면 자위대 군인들이 김정일의 초상화를 향해 절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는 더 큰 화를 자초하는 화근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나. 미국 핵에 대한 접근성 강화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일본정부와 자위대는 유사시 미군의 핵능력에 대한 접근 권한, 즉 핵전력과 핵전략의 운용 전술에 대한 협의와 의사결정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조용하게 기울여왔다. 북한의 1차 핵실험 6개월 후인 2007년 3월 20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당시 미국과 함께 작성하고 있던 공동작전계획에 미국측이 핵우산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sup>59</sup> 그 이유는 일본이 북한의 핵위협을 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미국이 일본과 어떻게 협력해서 대응할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핵무기 사용결정을 내리고 어떤 방법으로 일본에게 알려줄지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

<sup>59</sup> 『연합뉴스』, 2007년 3월 20일.

했다.

이후 일본 전문가와 관료들로부터 미·일 양국이 미군의 핵사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1998년부터 4년 간 유엔주재 일본대사를 역임한 사토(Yukio Satoh)는 지금까지 미·일 안보협력이 보여준 특징은 미국의 확장역지가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일본에서 최근 미국의 안보공약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sup>60</sup> 사토 대사는 미·일 양국이 핵을 포함한 확장역지의 개념을 공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이 미국의 핵전략과 작전계획에 대한 정보를 받고 일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유럽의 경험을 모델로 삼고 있는 듯하다.<sup>61</sup> 유럽에서는 냉전시대부터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나토 회원국들과 미국 사이에 핵관련 협력이 진행되어 왔다. NATO 회원국들이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이 그 동기였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문가와 관료들도 일본의 요구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외교정책분석연구소는 일본과 미국이 핵무기 운용에 국한된 NATO 방식의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 보다는 핵을 포함해서 보다 다양한 요소들을 다루는 ‘억지정책그룹’(deterrence policy group)을 창설하는 것이

---

<sup>60</sup>- Yukio Satoh, “Reinforcing American extended deterrence for Japan: an essential step for nuclear disarmament,” *Policy Forum Online*, Nautilus Institute, May 5, 2009.

<sup>61</sup>- Jacquelyn Davis, et al. (eds.), *Updating U.S. Deterrence Concepts and Operational Planning* (Cambridge, MA: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February 2009), p. 10.

I
II
III
IV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sup>62</sup> 이 그룹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로는 다음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① 미국의 핵정책과 미·일 핵협력 시나리오, ② 미·일 공동 위협평가, ③ 북한과 중국의 억지전략에 대한 공동연구, ④ 핵·미사일 확산에 대한 공동대처, 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제재와 외교적 조치 공유 등.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로 임명되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캠벨(Kurt Campbell)도 미·일 양국이 핵억지의 요소들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sup>63</sup>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과 미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은 자체적인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미군 핵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차선책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을 아시아 최대의 전략동맹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도 서유럽에서 진행되어 온 수준의 핵협력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역시 일본의 핵무장을 피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서 일정 부분의 핵협력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보장책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만약 이런 노력이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자체 핵무장을 비밀리에 추진하되 핵보유 여부는 이스라엘과 같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sup>62</sup>-James Schoff, *Redigning Priorities: The U.S.-Japan Alliance & the Future of Extended Deterrence* (Cambridge, MA: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March 2009), p. xiv.

<sup>63</sup>-Stephen Yates and Christian Whiton, "Smarter North Korean diplomacy: talking to allies is more important than talking to Pyongyang," *Wall Street Journal*, August 5, 2009.

## 5. 북핵억지를 위한 협력방안

한·미의 전략적 협력의 틀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가. 고려사항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는다는 비핵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이 북한 핵에 대응한 안보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앞서 소개한 인도·파키스탄과 미국 간의 핵협력 사례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 논란과 대미 접근성 강화 움직임도 참고해야 할 최신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사례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한국과 미국 모두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모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NPT의 회원국이라는 사실이다. 다만 비핵국인 한국과 핵국인 미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다를 뿐이다. 둘째는 미국의 원자력법이다. 이 법은 원자력 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사항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핵관련 안보협력의 지침도 담고 있다. 셋째는 냉전시대에 미국과 서유럽의 NATO 회원국들 사이에 있었던 핵협력 노력의 사례와 교훈을 참고하는 것이다.

#### (1) NPT

NPT는 12개항의 전문과 11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부문은 ‘비확산’(Non-proliferation) 항목이다. 비확산 부문은 전문 1~3항과 제 I, II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국의 의무사항과 비핵국의 의무사항을 구분해



서 규정하고 있다. 핵국의 의무사항은 핵무기와 핵무기의 통제권을 비핵국에게 ‘이전’(transfer)하거나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assist)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비핵국의 의무사항은 핵국으로부터 핵무기나 핵무기의 통제권을 ‘접수’(receive)하거나 핵무기를 ‘제조’(manufacture) 혹은 ‘획득’(acquire)하지 않는 것이다.

제 I 조는 핵보유국의 증가가 기존 핵국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핵국들이 비교적 잘 이행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NPT가 체결되기 전까지 핵국에 의한 핵기술 이전과 지원이 많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1958년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영국의 핵개발을 도왔고, 소련도 1960년대 초까지 중국의 핵개발을 지원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비밀리에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도왔다. 그러나 NPT 체결 이후에는 핵국에 의한 핵개발 지원 경향이 거의 사라졌다.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지원했던 중국은 1992년 NPT에 가입한 후에도 지원을 계속했지만 이후 정책변화를 보여 수출통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4년에 NSG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제 II 조와 관련, NPT가 체결되기 전인 1963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1970년대 후반에 가면 전 세계의 핵국이 20~30개국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1970년대 후반까지 핵국은 기존의 P5외에 이스라엘이 추가되었고, 2009년 말 현재 이상의 6개국에 더해 인도와 파키스탄 및 북한을 합쳐서 모두 9개국이 핵을 보유했다. 따라서 비핵국의 핵개발 금지를 규정한 NPT 제 II 조는 대체적으로 잘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서방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여러 나라들이 안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유에서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NPT에 토대를 둔 다양한 제도와 국제적 노력을 통해서 비핵국의 핵개발 시도가 여러 번

좌절되거나 봉쇄되었다.

케네디 대통령의 1963년도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NPT가 핵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핵무기가 확산되기 시작한 초기에 있었던 ‘제1차 핵확산 우려’(first wave of proliferation fear)는 NPT에 의해서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소련의 붕괴로 인한 핵기술 확산이나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보유가 초래할 ‘연쇄 핵확산’(cascading of nuclear proliferation)과 이로 인한 ‘제2차 핵시대’(second nuclear age)의 도래를 우려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sup>64</sup>

## (2) 미국 원자력법

미국 원자력법은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규제하는 요소와 촉진하는 요소를 동시에 담고 있다.<sup>65</sup> 원자력법의 제12장은 ‘공동방어와 안보’(common defense and security)를 달성할 목적으로 ‘기밀자료’(restricted date)를<sup>66</sup> 통제하고 타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핵무기에 관련된 민감한 자료에 대한 한

---

<sup>64</sup> 제2차 핵시대란 보유한 핵전력의 규모는 작지만 새롭게 핵국으로 등장한 국가들 사이의 핵무기 개발 경쟁이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안보 질서를 지칭하는 말이다. Colin Gray, *The Second Nuclear Age*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9).

<sup>65</sup>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uclear Regulatory Legislation: 107th Congress; 1st Session,” Washington, D.C., June 2002.

<sup>66</sup> ‘기밀자료’(Restricted Date)란 다음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① design, manufacture, or utilization of atomic weapons; ② the production of special nuclear material; or ③ the use of special nuclear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energy. 기밀자료는 주로 핵무기에 관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병국 박사와의 의견교환, 2009년 9월 28일.

국의 접근을 막고 한·미협력을 장애할 수 있다. 특히 제12장의 기본정책(Sec. 141. Policy) 부분은 미국정부로 하여금 ‘안전조치 원칙’과 ‘평화적 이용 원칙’에 의거해서 한국의 핵관련 전략적 협력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 < Sec. 141. Policy > —

It shall be the policy of the Commission to control the dissemination and declassification of Restricted Data in such a manner as to assure the common defense and security. Consistent with such policy, the Commission shall be guided by the following principles:

- a. Until effective and enforceable international safeguards against the use of atomic energy for destructive purposes have been established by an international arrangement, there shall be no exchange of Restricted Data with other nations except as authorized by section 144; and
- b. The dissemin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relating to atomic energy should be permitted and encouraged so as to provide that free interchange of ideas and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to scientific and industrial progress and public understanding and to enlarge the fund of technical information.

미국은 자국의 핵전력이나 핵무기 운용전략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원자력법상 비핵국인 한국에는 제공할 수 없는 ‘기밀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정부로서는 범세계적 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려는 마당에 아무리 ‘전략동맹’이라고 하더라도, 핵무기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상충되게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서 한·미동맹차원에서

한국을 보호할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자력법의 조항은 Sec. 144의 b(1)항에서부터 b(4)항까지이다. 이들 조항에 따르면, 북한 핵에 대비해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계획 수립, 핵무기의 사용 및 핵방호를 위한 요원의 교육·훈련, 북한의 핵능력 평가 등을 위한 한·미 공조가 가능하다. 아울러 대응 핵무기 운반체계의 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 Sec. 144 b(1)~b(4) >

- b. The President may authorize the Department of Defense, with the assistance of the Commission, to cooperate with another nation or with a regional defense organization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and to communicate to that nation or organization such Restricted Data (including design information) as is necessary to
- (1) the development of defense plans;
  - (2) the training of personnel in the employment of and defense against atomic weapons and other military applications of atomic energy;
  - (3) the evaluation of the capabilities of potential enemies in the employment of atomic weapons and other military applications of atomic energy;
  - (4) the development of compatible delivery systems for atomic weapons; whenever the President determines that the proposed cooperation and the proposed communication of the Restricted Data will promote and will not constitute an unreasonable risk to the common defense and security, while such other nation or organization is participating with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an international arrangement by substantial and material contributions to the mutual defense and security;

I  
II  
III  
IV

또한 원자력법 Sec. 144의 d(2)에 의거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북한 핵능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과 기밀자료 공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Sec. 144 d(2) >

- d. (2) [The President may] authorize the Department of Energy, with the assistance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cooperate with another nation to communicate to that nation such Restricted Data, and the President may, upon making such determination, authorize the Department of Defense, with the assistance of the Department of Energy, to cooperate with another nation to communicate to that nation such data removed from the Restricted Data category under section 142, as is necessary for
- (A) the support of a program for the control of and accounting for fissile material and other weapons material;
  - (B) the support of the control of and accounting for atomic weapons;
  - (C) the verification of a treaty; and
  - (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classification of data on atomic weapons, data on fissile material, and related data.

결론적으로, 미국 원자력법이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촉진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북핵폐기가 완료되는 그날까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비한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군사적으로 대비

하는 것은 동맹의 핵심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미국에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북한 핵능력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이므로, 우리 영토 내에서 발생한 핵개발이라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완전하게 파악하는 일은 주권사항이다. 아울러 북핵폐기를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성공적인 비핵화를 달성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한국정부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3) 미·서유럽의 핵협력 사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소련과 동유럽의 막대한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유럽 국가들의 핵무장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미국이 NATO 회원국들로 하여금 병력을 차출해서 핵무기를 갖춘 해군력을 만드는 ‘다국적 핵군’(Multilateral Force: MLF) 창설 방안을 제의한 것이다. MLF 방안은 NATO가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이들 핵무기를 NATO 회원국에서 파견한 병력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NATO의 통제하에 두자는 것이었다. 당시 핵무기가 없던 NATO 회원국들은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길 원했고, 특히 서독이 MLF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반면에 미국은 NATO 군사동맹을 활성화하고 NATO를 이용한 ‘핵무기 집중화’(nuclear centralization)를 통해서 서유럽 각국의 개별적인 핵개발을 막고자 했다. 특히 미국은 MLF를 이용해서 서독의 핵무장을 예방하고자 했다. 케네디 행정부는 출범 초기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MLF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1963년 2월 NATO에 정식으로 MLF 창설을 제의했는데, 골자는 NATO 사령관 휘하에 핵

무장 군함과 잠수함 선단을 두자는 것이었다.<sup>67</sup> 하지만 최종 핵단추를 누를 권한은 미국이 갖도록 했기 때문에 NATO 회원국들은 MLF가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핵문제에 대한 독일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데 대한 NATO 회원국들의 우려 때문에 MLF 방안은 실현되지 못했다.<sup>68</sup>

핵비확산 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MFL 창설 움직임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결협상의 큰 장애요인이었다. 미·소는 1962년부터 NPT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MLF 창설문제로 1965년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은 MLF 창설을 유럽의 단일화를 가속화하고 구성국 간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길로 간주했다. 반면에 소련은 이를 서독이 핵무기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MLF와 MLF의 창설을 허용하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sup>69</sup> MLF에 대한 쌍방의 입장 차이는 1965년에 양측이 제시한 NPT 초안에 잘 드러나 있다. 미국은 1965년 8월에 제출한 초안에서 핵국이 핵무기를 비핵국의 ‘국가통제’(national control)하에 두는 것과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통제는 미국의 핵무기를 다른 비핵국이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으나 MLF와 같은 다자동맹 체제에 의한 관리는 허용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즉 군사동

---

<sup>67</sup>-Lawrence Freedman,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1989), p. 327.

<sup>68</sup>-Honoré Catudal, *Nuclear Deterrence--Does It Deter?*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1986), pp. 221~222; Karl-Heinz Kamp, "Germany and the future of nuclear weapons in Europe," *Security Dialogue*, Vol. 25, No. 3 (September 1995), p. 281.

<sup>69</sup> 1964년 이후 소련은 NPT를 NATO의 핵협력을 차단하고 특히 서독의 핵능력 보유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맹에 의거한 군대파견 등을 통해서 비핵국에 대해 핵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1965년 9월에 제출된 소련의 제안은 MLF 창설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 NPT와 MLF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1965년 말 존슨 행정부는 MLF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NPT 체결의 장애물이 사라졌으며 핵국의 핵무기 이전 금지와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골자로 하는 NPT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

MLF의 대안으로 미국이 1966년 12월 선택한 것이 NATO 내에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을 만드는 것이었다. 미국의 핵우산이 구체성과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미국은 핵계획그룹을 창설하여 소련의 침공이 있을 경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핵을 사용할 것인가를 논의했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소련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핵을 배치했다.<sup>70</sup> 핵계획그룹은 NATO의 비핵 회원국들이 핵 관련 계획과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는 마당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서독이 상설 회원국이고 나머지 회원국들 중 서너 국가가 돌아가면서 회의에 참가했다. 하지만 냉전종식 이후 NATO는 통합된 군사 전략의 일부였던 핵무기를 떼어내서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었고, NPG의 역할도 축소되었다.<sup>71</sup> 유럽에서는 냉전종식으로 축소된 안보 협력 조치가 동북아에서는 북한 핵으로 인해서 일본과 한국에 의해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sup>70</sup>- Stephen Yates and Christian Whiton, “Smarter North Korean diplomacy: talking to allies is more important than talking to Pyongyang,”

<sup>71</sup>- Holger Mey and Andrew Denison, “France’s nuclear tests and Germany’s nuclear interests,” *Comparative Strategy*, Vol. 15, No. 2 (1996), p. 171.

I
II
III
IV



NPT 제I조의 핵무기·핵통제권 이전금지 부분은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 즉 핵우산 공약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다. 냉전시대에 서독 등 서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계획이나 관련 의사결정에 가급적 많이 관여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NPT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핵우산 공약을 실현했다:<sup>72</sup> ① 서유럽에 미군이 통제하는 핵무기 배치, ② NATO 회원국에 대해서 전시에 핵무기 사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실시, ③ NATO의 핵계획그룹(NPG)을 통해서 핵문제에 대한 자문과 협의진행. NPT로 인해서 동맹국과의 핵무기 공유가 금지되고 핵우산 공약의 실천수단도 규제되었지만, 미국은 NPT 범위 내에서 우회적으로 핵우산 공약을 제공한 것이다. 한편 미군 핵무기에 대한 통제는 전쟁의 발발로 NPT 제I조의 의무가 자동 소멸될 때까지 미국이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NATO 동맹국이 전시에는 미군 핵을 사용하거나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유럽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는 ‘이중열쇠’(dual key) 개념이다. 이중열쇠는 미국이 1980년대 초 서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면서 배치된 핵무기를 해당국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미국은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INF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퍼싱II미사일과 ‘지상발사크루즈미사일’(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 GLCM)을 유럽에 배치하면서 5억 달러에 달하는 배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중열쇠 개념에 입각해서 핵무기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제안했다.<sup>73</sup> 하지만 NATO는 이에 대해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

<sup>72</sup>-Lewis Dunn, “The NPT: assessing the past, building the futur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16 No. 2 (July 2009), pp. 144~145.

특히 서독은 소련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결정에 대해 미국과 공유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반대했다.<sup>74</sup> 이는 비록 미국의 미사일을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원치 않는 발사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서, 유사시 정치적, 전략적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NATO 회원국들의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 나. 기본방향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sup>75</sup>

### (1) 한국형 억지전략 구상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국방안보정책은 부지불식간에 억지전략의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었다. 외부의 위협요소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는 개념 자체를 갖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상대방의 침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국방정책의 기본목표를 두어왔다. 이승만 대통령

73. 이중열쇠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첫째는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유럽에 보관할 때 사용한 방식으로서 핵탄두는 미군이, 핵탄두의 운반수단은 탄두가 배치된 국가의 군대가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양국통제'(dual national control) 체계로서 흔히 '이중열쇠통제'(dual-key control) 체계라고 부른다. 둘째는 핵탄두를 탑재한 운반수단을 발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열쇠를 동시에 사용하는 '핵발사 체계'(nuclear release system)로서 미국의 전략 핵발사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퍼싱 II와 GLCM은 핵탄두와 발사체가 모두 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 미국이 제한한 이중열쇠 체계는 후자인 핵발사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74. Honoré Catudal, *Nuclear Deterrence--Does It Deter?*, p. 278.

75. 필자의 다음 논문의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전성훈, “미국과 북한의 핵 억지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전략연구』, 제XIII권 제2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pp. 170~171, 180.

의 ‘북진 통일론’이 있었긴 하지만 이는 군사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정책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사표시이자 선언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로 출발한 한국의 여건은 한국전쟁 이후 더욱 피폐해졌기 때문에 국가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에 의지하면서 경제력을 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태생적 여건도 한국으로 하여금 국방태세의 골간을 억지전략에 의존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가 제약받게 되면서 선제공격은 더욱 생각하기 어려운 대안이 되어버렸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는 억지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대내외적으로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 억지에 바탕을 둔 안보전략의 개념적 틀을 갖추고 이론화 작업을 거쳐서 국민들이 국방정책을 명료하게 이해함으로써 국내여론의 통합을 기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적극 홍보해서 우리의 국방전략이 공세적이고 호전적이지 않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노력이 약했던 것이다. 이는 국방분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 집행 및 홍보과정이 선진화, 과학화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정책분야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첨예한 지정학적 이해가 얽혀있는 동북아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방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위협요인에 대한 선제공격이 통일 이후에도 실현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려운 만큼 한국의 국방전략은 기본적으로 억지개념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이 모두 핵국이거나 잠재적 핵능력(일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 핵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안보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억지전략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국방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이 어차피 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한국형 억지전략은 일단 당면한 북한의 핵을 포함하여 대량 살상무기 위협과 재래식 위협을 억지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안보상황과 잠재적인 위협요인까지를 고려해서 억지전략의 대상과 목표의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통일 이후의 안보환경과 주변 4강의 군사력 및 안보정책 그리고 좁게는 동북아, 넓게는 아태지역과 지구적인 안보환경의 변화까지를 염두에 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걸 맞는 억지전략을 구상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이 1950년대 실행한 대량보복전략에 의거해서 우리 군의 전력구조가 지금까지도 육군 중심의 불균형한 구조로 틀지어져 있는 문제점도<sup>76</sup> 함께 해소하는 것이 한국형 억지전략 수립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비핵국인채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국의 억지전략이 냉전 시대 미국의 핵심 억지전략이었던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을 따르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다만 핵보복과 억지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케네디 행정부가 구현한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 전략을 하나의 모델로 참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초기의 재래식 공격에는 서유럽의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하고, 전쟁이 확대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전술핵을 사용하며, 최종적으로 전면 핵전쟁도 감수한다는 것이 유연반응전략의 골자이다. 북한의 남침 초기에는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하되 수도

76. 서진태, 『미국의 New Look 정책의 재조명』 (성남: 세종연구소, 1997), pp. 7~9.

I
II
III
IV

권이 위협받으면 전술핵 사용을 고려하고 서울이 함락되면 전술핵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3단계 구도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여기에 전쟁의 어느 기간에라도 북한이 핵·화학·무기를 사용하면 전술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방침을 추가해서 한국식 유연반응전략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위협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남한 땅에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미사일방어망 구축 등을 통한 ‘거부억지’(deterrence by denial) 전력도 한국형 억지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 핵비확산 외교강화

북한의 핵위협을 외교적 차원에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기본 전제는 우리의 비핵정책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해서 한국의 핵개발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북한처럼 핵개발을 추진한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핵비확산 외교를 강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핵비확산 외교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 핵개발의 불법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을 정치·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핵을 개발한 북한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남한의 비핵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다. 원자력과 핵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주변 4강이 핵국 혹은 핵잠재국인 우리의 경우, 원자력 기술이 발전할수록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핵개발을 유인하는 지정학적 동기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북핵문제가 국제안보의 핵심 현안인 상황에서 한국도 핵을 개발할지 모른다는 국제사회의 의심은 피하기 어려운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처음 두 가지는 국제사회가 남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에 기인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남한의 불완전한 비핵정책이 그 배경이다. 첫째, 남북한은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우려이다.<sup>77</sup> 둘째, 국제사회에서 보기에 남북한은 핏줄과 문화 그리고 역사와 정서가 같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유사한 행동패턴을 보일 것이므로 어느 한쪽이 핵개발을 하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의혹은 결국 남한에게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핵비확산과 수출통제체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불신이 남한에 비해 훨씬 큰 것은 사실이나 남한의 경우에도 핵의혹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유형, 무형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원자력 선진국들의 기술독점 의도나 전통적인 경쟁국인 일본의 견제심리가 깔려 있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한국이 그동안 지정학적 요인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핵의혹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비핵정책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논리를 개발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다. 특히 2004년도에 발생한 IAEA 신고 사건은 한국이 1991년

<sup>77</sup> 예를 들어, 미 에너지부는 남북한이 핵보유를 심각히 고려할 만한 정치·군사적 동기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U.S. Department of Energy, “Policy forum: energy futures,” *Washington Quarterly* (Autumn 1996), p. 94.

I
II
III
IV

이후 비핵정책을 견지하며 쌓아올렸던 국제적인 신뢰와 명예에 타격을 가했다.

원자력과 핵은 정부의 다양한 부처가 연관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북문제이자 9·11 테러 이후 국제안보의 중심축으로 등장한 핵비확산에 관련된 중요한 외교문제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대비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 원천기술을 수입함으로써 받는 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과학기술계의 몫이고, 민감한 기술이 불법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경제·산업부처의 관할이다. 이 모든 것을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정보력이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2004년 IAEA 신고 사건은 원자력이 갖는 이와 같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간과한 결과이기도 하다. 원자력이 특정 부처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임을 인식했다면, 사태 초기의 혼란을 피하고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국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처의 입장을 종합, 조정, 조율하는 정부의 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핵문제를 남북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상을 주는 것도 원자력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핵문제에 내포된 다차원적인 복잡성을 간과하는 것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모범생 남한과 불량배 북한을 동일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핵비확산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세부 추진방안

### (1) 한국 대응전력의 조화로운 발전

한국전쟁이 미국의 대표적인 대소련 억지전략인 대량보복전략 탄생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기여를 한 것과 동시에 한국전 이후 한국의 국방정책 역시 미국의 억지전략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소위 ‘신구상’(New Look) 정책에 바탕을 두고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한국의 지상군과 미군의 핵무장 공군력으로 한국의 안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한국군이 육군 위주의 불균형한 모습을 띠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억지전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1950년대 미국의 억지전략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21세기 한국형 억지전략의 핵심 요소는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sup>78</sup> 이를 위해서는 미군과의 군사협력도 육·해·공군 가운데 특정분야를 특정국가가 주로 책임지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각 군별로 한·미 간에 업무를 균형 있게 분담하고 협조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국군이 육·해·공군 별로 독자적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 발전해야 만 주한미군의 지위에 급격한 변동이 오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새로운 억지전략이 방어적 차원의 억지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선제공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미국의 공세적인 전략에 편승하는 데는 과거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up>78</sup> 전성훈, “미국과 북한의 핵억지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pp. 173~174.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간에 분쟁이 발발하고 미군이 중국군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한국은 피공격국가에 인접한 공격국가의 동맹국이 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상당한 안보부담과 위협을 갖게 될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일말의 우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발생한 논란의 중요한 배경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런 제반사항들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도 북한위협에 고착되어 있던 지금까지의 경직된 관계에서 위협의 다변화에 맞게 보다 신축적이고 다양하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미 동맹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육·해·공군 통합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앞으로 한국군은 일정 규모의 분쟁에 대해서는 육·해·공군 연합으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 구조, 교리 및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공군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육군 위주로 해왔던 전력구성을 3군의 전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해·공군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전력증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정 규모의 분쟁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을 통한 ‘穩妥한 軍隊’ 즉 ‘全軍’(total force)을 육성해야 한다.

## (2) 전술핵 재배치

북한 핵에 대응해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방안은 소규모의 주한미군 전술핵무기를 북핵폐기가 상당히 진척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1991년 9월 27일 부시 대통령이 해외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모두 제거되었고, 이로 인해 조성된 ‘한반도 내 핵무기 부재’ 상황은 『남북 간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하는 중요한 배경이었다. 전술핵 철수가 북한에 대해서는 핵개발 포기와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이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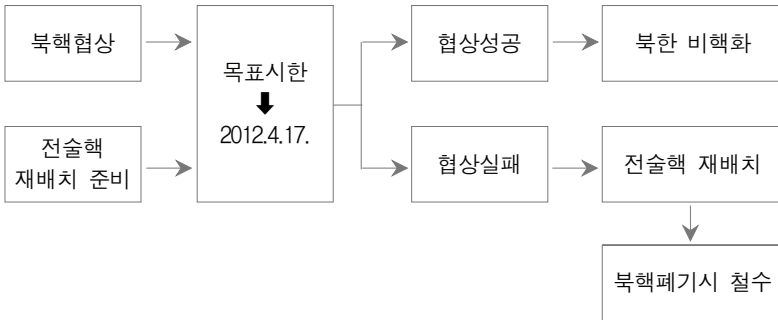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핵우산은 초창기부터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핵우산을 제공받는 미국의 서유럽 동맹국들은 핵우산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마바 대통령이 2009년 6월 정상회담 공동문서에서 확장억지를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핵우산 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sup>79</sup>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핵우산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는 바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재반입하고 적극방어 차원에서 보다 공고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다. 핵우산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관계가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양국이 상생하는 관계라는 사실은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된다.

따라서 시한을 설정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북한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시작전권이 전환될 예정인 2012년 4월 17일을 시한으로 정해 놓고 북핵폐기를 추진하되, 이 시점까지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

<sup>79</sup> 한인택, “동맹과 확장억지: 유럽의 경험과 한반도에의 함의,” p. 107.

으면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반입된 전술핵은 북핵 폐기 완료와 동시에 철수되는 조건부 재배치이다.<sup>80</sup>

● 그림 III-1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정책



미국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거부하고 있으나 미국을 설득하고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에 배치되었던 전술핵은 1991년 미·소의 묵시적 합의하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철수했지만 러시아정부의 양해만 얻으면 외교적인 문제도 없을 것이다.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북한 핵개발로 인해서 철수했던 전술핵을 불가피하게 재반입하는 만큼, 러시아와 중국정부를 자극해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북핵폐기를 촉진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소규모 전술핵의 한시적 재배치는 한국 사회의 핵주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국의 비핵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핵 무장 논란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sup>80</sup> 전성훈, “북한 핵개발의 안보적 함의와 동북아·글로벌 차원의 영향,” 『북핵 문제와 북한 체제변화』 (제21차 세종국가전략포럼, 2009.10.9), p. 13.

아울러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20년 간 추진 하면서 핵을 보유한 것은 핵개발 포기과 재처리·농축 시설의 보유를 금지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 공동선언 참여를 위한 당근이었던 전술핵 포기결정을 철회하고, 북한의 핵능력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소규모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상대방의 약속이행을 전제로 제공했던 당근을 상대가 약속을 파기했을 경우 철회하는 것은 협상이론상 ‘상응’(Tit-for-Tat: TFT)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서, TFT전략은 무모한 대결전략이 아니라 상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협상전략이라는 점이 입증된 바 있다.<sup>81</sup>

일각에서 북한 핵에 대응해서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북한 핵을 빌미로 일본의 핵무장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 이상으로 한반도의 안보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로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일이다. 북한 핵을 억지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한시적인 전술핵 재배치가 일본의 영구 핵무장 보다 나은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의를 달지 않은 것이다.

서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북핵폐기를 전제로 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소련이 서유럽의 요충지를 타격할 수 있는 SS-20, SS-4, SS-5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자 미국은 1979년 12월 소련의 서유럽 침공에 대비한 NATO의 핵억지력을 높이고 동시에 협상에

<sup>81</sup>-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의해 쌍방 미사일의 철수를 도모하는 소위 ‘이중경로’(dual-track)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에 따라서 미국은 108기의 퍼싱Ⅱ미사일과 464기의 지상발사크루즈미사일(GLCM)을 1983년 12월부터 5년에 걸쳐서 서유럽에 배치하고, 이와 동시에 유럽에서 미·소의 중거리핵 미사일을 폐기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협상을 통해 소련이 이미 배치한 미사일을 철수시키고 이를 대가로 미국이 예정된 미사일배치를 취소하도록 하되, 협상이 실패하면 예정된 미사일 배치를 강행한다는 정책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 11월 18일 소련의 중거리미사일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퍼싱Ⅱ미사일과 지상발사크루즈미사일 배치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 ‘제로옵션’(zero option) 계획은 이중경로 가운데 협상의 경로에 해당된다. 레이건의 제안을 계기로 미·소 협상이 1981년 11월 30일 시작되었고, 레이건은 1983년 3월 미·소가 일정수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하도록 완화된 제로옵션의 수정안을 제의했다. 1983년 9월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이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983년 11월 미국은 퍼싱Ⅱ와 GLCM의 실전배치를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미·소 양국은 1987년 『INF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이 보유한 모든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결국 서유럽의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사례는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가 북핵폐기를 도모하는 한·미의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는 협상자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책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남북한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후 한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

자들로부터 북한 핵을 타격할 수 있다는 발언이 몇 차례 있었다. 예를 들어, 2000년 12월 이준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을 전제로 유사시 대북 타격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sup>82</sup> 2008년 3월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남한)지역에서 작동하지(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북한 핵무기가 남한에서 터지지 않도록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장소를 타격하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정밀유도무기로 선제공격을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sup>83</sup> 이 발언이 소위 ‘대북 선제공격’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확대되어 국내 진보세력의 비판을 야기한 것은 물론 북한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북대화 거부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통지문을 발표하고 김태영 합참의장의 답변을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북남관계 역사에서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엄중한 도전이며, 우리에게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sup>84</sup> 이후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남한의 선제타격론과 미국의 선제공격론을 엮어서 대남 비방을 강화했다.<sup>85</sup> 이런 논란은 핵이 없는 한국에게 있어서 북

<sup>82</sup> 이준 국방부 장관은 2002년 12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북한의 전술 핵무기 개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한국에 대한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사시 대북 타격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2년 12월 30일.

<sup>83</sup> 『중앙일보』, 2008년 3월 27일.

<sup>84</sup> 『연합뉴스』, 2008년 3월 29일.

<sup>85</sup> 예를 들어,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남한의]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보다 신속하고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 남조선의 호전파들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타격

한의 핵이 먼저 사용되는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군사목표이기 때문에 한국군은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지하는 것은 물론 한국군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의 군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 (3) 남북 통행합의서의 보완

미국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핵기술 및 핵물질이 남한이나 외부로 유출되는 확산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북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한·미 전략적 협력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된다. 북한이 원시적인 제1세대 핵탄두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북한의 핵무기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남한으로 운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DMZ에 인접한 수도권과 해상침투가 용이한 반도인 점 등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규모가 큰 제1세대 핵탄두조차 남한으로 운반이 가능하다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남북 간에 도로·철도·해운통로를 개설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개방된 통로가 북한정권의 의도에 따라서는 대남 공격용 핵탄두의 운반통로로 역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남북한이 통행과 관련해

---

수단에 의거한 우리 식의 선제타격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그 위에 통일조국을 세우는 가장 단호하고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전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로동신문』, 2008년 12월 23일.

서 합의한 문건은 다음 네 가지로서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졌다.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02.12.6), 『남북사이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04.4.13),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합의서』(’04.5.28),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02.12.8).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보다 철저한 규제를 가해서 유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의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한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4) 원자력 외교 역량 강화

한국의 원자력 외교는 1990년대 초 담당부서인 군축원자력과가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산하에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지금은 국제기구 소속의 군축비확산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군축비확산과야말로 한국 원자력 외교의 최선봉에 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군축비확산과는 많은 성장을 해왔다. 군축과 비확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수인력의 지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현안에 대한 역량을 결집해왔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원자력 외교는 그 역사도 일천하고 조직도 미약하다. 원자력 외교의 중요성이 일본에 비해 적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외교부 내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군축비확산과의 확대와 위상 제고를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 북핵과 평화체제 문제를 다루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핵비확산 외교를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하고 군축비확산과를 국으로 승격시켜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
II
III
IV



원자력 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관련 부처 간에 그리고 특정 부처 내에서 연구소와 부처 간에 전문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런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료조직이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해야 하지만 한국의 관료사회가 그렇게 유연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각 부처의 일부 직급을 민간인에게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시작에 불과하다. 또한 부처 간에 국장급 인사교류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무차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서 인적자원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21세기 국제사회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지금과 같이 고시에 의존해서만 선발하겠다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각 부처에서 특정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이 해당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재들과 겨룰 수 있는 지식과 실력을 갖추어야만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한국의 문제는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깔려있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 과거의 인습과 집단이 기주의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대처능력 부재가 큰 원인일 것이다. 현재의 공무원 임용 제도를 하루 빨리 파격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정부가 2013년부터 외교관의 절반을 외무고시가 아닌 ‘외교아카데미’(가칭)에서 충원하기로 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86</sup>

특히 핵비확산과 같이 외교에 대한 일반이론뿐 아니라 국제안보,

---

<sup>86</sup> 외교아카데미는 2년 석사과정으로 운영되며, 100명을 선발해 언어와 지역, 경제 통상, 다자외교 등 분야별 교육을 실시한 뒤 20명을 외무고시 합격자와 같은 5급 외교관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2011년 첫 외교아카데미 입학생을 모집해서 2013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2009년 9월 21일.

원자력 기술, 군비통제의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합한 인재의 선발을 경직된 고시체계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재를 모을 수 있는 열린 선발제도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각 부처 간에 그리고 부처 내에서 관련분야 간에 전문가의 파견과 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처 간 업무의 성격과 영역이 공통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처 간에 전문가의 상호 교류를 제도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다.

#### (5) 한·일, 한·미·일 핵자문회의

동북아에서 한·일 양국은 모두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받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무기가 개발된 이래 역사적으로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을 정립하고 필요한 훈련을 해놓지 않는 한 핵우산 공약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즉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더불어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협력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미 국방부가 소위 ‘지구적 태세검토’(global posture review)에 따라서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과 신축적인 운용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역지의 신뢰성이 떨어졌고, 이는 동맹에 대한 안보공약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는 사실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sup>87</sup> 또한 2012년 4월을 목표로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가 추진되고

I
II
III
IV

있는 한국의 경우 미국의 전체적인 안보공약과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서는, 서유럽의 경험을 원용해서 미군의 핵전력 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한국도 미국 핵무기의 표적선정 등 사용계획에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고, 미국의 핵탄두를 한국의 미사일에 탑재하는 등 핵우산 구성전력에 한국군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sup>88</sup>

2009년 8월에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서유럽의 핵계획그룹과 같은 동북아판 ‘핵전략계획그룹’(Nuclear Strategic Planning Group: NSPG)을 창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sup>89</sup>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 고위자문관을 담당했던 예이츠와 화이튼(Stephen Yates and Christian Whiton)은 지금의 동북아는 서유럽의 1960년대 상황과 유사하다고 진단하고 미국은 동맹국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NSPG를 창설해서 핵억지 및 방어계획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동맹국들과 논의를 통해 전통적인 핵억지 외에도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거부억지’(deterrence by denial) 등으로 억지의 저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

<sup>87</sup> Jacquelyn Davis, et al. (eds.), *Updating U.S. Deterrence Concepts and Operational Planning*, p. 11.

<sup>88</sup> 홍순명, “서독 사례로 본 ‘핵 없는 핵 보유’ 가능성,” 『신동아』, 2009년 7월호, pp. 288~291.

<sup>89</sup> Stephen Yates and Christian Whiton, “Smarter North Korean diplomacy: talking to allies is more important than talking to Pyongyang,”

북한의 잘못된 행동으로 중국의 공격능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지도부가 깨닫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대북한 압력행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서유럽식의 핵계획그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비전’에 미국의 확장역지 공약을 언급한 것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sup>90</sup> 이들은 한국이 미국과 핵무기에 관한 전략, 전력구조, 운용 독트린 및 표적선정 등을 논의하기를 원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극히 예민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를 의미 있게 다룰 준비가 되어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문제와 같이 통제와 강압의 사안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으며, 한국이 일본을 기준으로 삼아 미국에 대한 요구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각각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09년 6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소 수상이 “북한 핵문제가 심각해지면 일본 내부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이야기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한·일 간에 북핵에 대응한 전략대화를 시작하자”고 응수하고 한·일

---

<sup>90</sup>-Brad Glosserman and Ralph Cossa, “U.S.-ROK relations: a Joint Vision and concerns about commitment,” *PacNet Newsletter #54*, Pacific Forum CSIS, August 4, 2009.

핵자문회의 구성을 제의했어야 했다.

또한 북핵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핵보다 정권붕괴를 더 걱정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북핵을 이대로 방치하면 중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지도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다. 중국전문가들이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아소 수상의 핵무장 발언이 중국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이 축적되어 일본의 핵무장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 즉 일본 핵이라는 ‘절대 악’이 ‘필요 악’으로 둔갑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예방하는 데 실패한 우리에게 남은 현실적인 대안은 ‘북핵의 관리’이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통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핵무기를 일거에 없애겠다는 성급한 마음에서 북핵문제에 ‘올 인’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 전략대화과 핵자문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북한 핵을 핑계로 한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미·일 핵전략 대화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또한 양국 내에 존재하는 핵무장 선호여론도 달래면서 양국의 비핵정책을 살려나갈 수 있는 완충역할도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일본과 미국 사이에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에 대한 일본의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미·일협력이 한·미 협력에 비해 앞서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 등 불량국가의 WMD를 제거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중인데, 일본과는 WMD 방어워킹그룹을 구성해서 WMD로 공격받았을 경우를 상정한 작전, 제독, 의료 등 제반 준비를 하는 반면에 한국과는 WMD 제거에 초점을 맞춘 반확산워킹그룹을 구성한 데 그치고 있다.<sup>91</sup>

핵전력 운용에 대한 미·일 간의 협력은 한국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소한 우리도 핵우산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전략 대화를 가질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한·일, 한·미 전략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를 한·미·일 ‘3국 핵자문회의’(Trilateral Nuclear Consultative Committee: TNCC)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할 때, 3국 핵자문회의는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일본의 핵무장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내의 핵무장 지지 여론을 무마하고 건설적으로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핵무기와 관련해서 한·미·일 3국 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만 서유럽의 경험을 고려할 때, 유사시 미군이 한반도 인근에서 중·러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냉전시대의 서독처럼, 중·러에 대한 미사일 발사의 책임을 한국이 공유하는 정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강대국 간의 분쟁에 연루되어 부담을 지

---

<sup>91</sup>- Paul Bernstein, *International Partnerships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y 2008), p. 29.

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핵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우리의 입지가 난처해질 수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러의 민감한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예지를 발휘해야 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참여하는 문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sup>92</sup>

---

<sup>92</sup> 전성훈, 『미국의 NMD 구축과 한반도의 안전보장』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220~221.

# IV. 북한 비핵화 추진시 한·미협력







## 1. 구소련의 비핵화 경험

본 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구소련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협력적 위협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CTR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구소련과 북한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CTR의 대상인 제거해야 할 위협과 제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대 위협요소는 ① 핵탄두, ② 하부구조, ③ 핵물질, ④ 인력이다. 위협을 제거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폐기’(dismantle)인데, 폐기는 다시 핵탄두의 ‘분해’(disassembly)와 핵시설의 ‘해체’(decommissioning)로 구분된다. 통상 핵무기는 ‘폐기’하고 핵시설은 ‘해체’한다고 말한다. 둘째는 ‘전환’(conversion)인데, 군사적 용도에서 평화적인 용도로 바꾼다는 의미의 전환은 시설과 장비의 용도를 바꾸는 ‘시설전환’과 과학기술자의 임무와 역할을 바꾸는 ‘인력전환’으로 구분한다.

### 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인력전환 사례

미국은 인력전환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과학기술연구센터’(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STC)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첫째, 미국을 비롯해서 CTR 프로그램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국가의 외무부가 지원하는 ‘정규프로젝트 프로그램’(Regular Project Program)이다. 둘째, CTR 참여국의 기타부처와 산업체가 지원하는 ‘파트너십 프로젝트 프로그램’(Partnership Project Program)이다. 셋째, 무기제조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I
II
III
IV

‘보충 프로그램’(Supplemental Program)이다.

1992년 11월 러시아에 ‘국제과학기술연구센터’(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ISTC)가 설립되었고, 우크라이나에는 ISTC의 자매기관인 ‘우크라이나 과학기술연구센터’(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in Ukraine: STCU)가 설립되었다.<sup>93</sup> CTR 대상이 주로 무기제조 전문가들이므로 자신의 신분과 전력을 숨기려고 이력서를 충실히 작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무기제조에 관여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련해체 시점인 1992년에 나이가 18세 이하였던 사람들은 무기제조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STC에 근무하는 과학자들의 봉급은 일급 35달러로서 1999년 이후 고정된 액수이며,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생활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이 문제로 등장했다.

### (1) 러시아

미국과 구소련의 인력전환 작업은 초기에는 ‘실험실 對 실험실’(Lab-to-Lab) 협력으로 시작했고, 이런 협력이 점차 확대되어 국제과학기술연구센터로 발전했다.<sup>94</sup> 미국 연구소의 한 실험실이 소련 연

---

<sup>93</sup>- ISTC의 경우 재정지원을 하는 국가는 캐나다, 미국, EU, 일본, 노르웨이, 한국 등이고, 혜택을 받는 과학기술자들의 출신국가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 등이다.

<sup>94</sup>- Siegfried S. Hecker, “Hearing of the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April 30, 2008, p. 3, <[http://cisac.stanford.edu/publications/hearing\\_of\\_the\\_united\\_states\\_senate\\_committee\\_on\\_appropriations\\_subcommittee\\_on\\_energy\\_and\\_water\\_development](http://cisac.stanford.edu/publications/hearing_of_the_united_states_senate_committee_on_appropriations_subcommittee_on_energy_and_water_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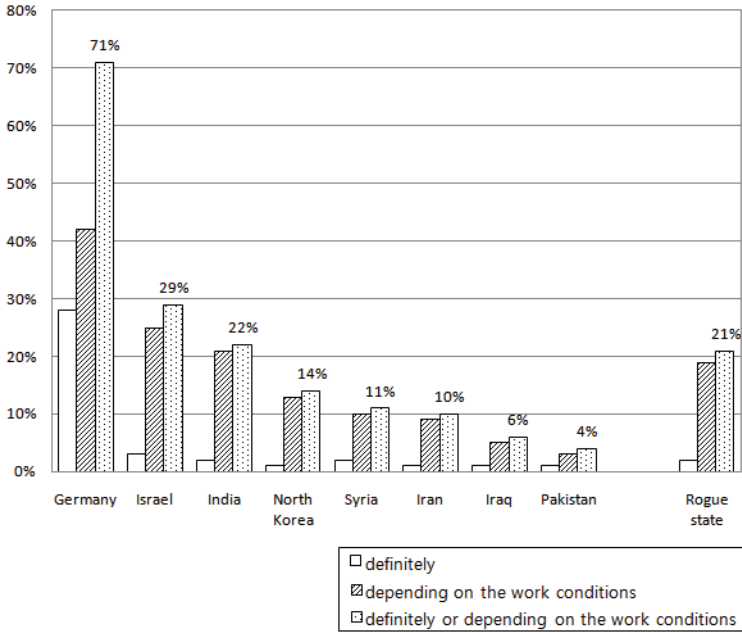
구소 내의 실험실과 자매관계를 맺고 연구협력을 추진한 ‘Lab-to-Lab’ 협력 프로그램은 아주 유익했다는 것이 초기부터 관여했던 전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장 헤커 박사의 증언이다.<sup>95</sup>

2002년 11월 2일~2003년 1월 23일까지 러시아의 30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602명의 과학자(물리·화학·생물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CTR 프로그램이 이들의 의식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sup>96</sup> 602명의 조사 대상자(WMD 관련 과학자)들 가운데 독일에 거주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과학자들은 전체의 71%였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29%), 인도(22%) 순으로서, 생활여건이 좋은 독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림 IV-1> 참조). 그 다음 북한(14%), 시리아(11%), 이란(10%), 이라크(6%)의 순이었고, 네 나라를 합쳐 ‘불량국가’로 단순화했을 때, 불량국가(네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나라)에서 직업을 가질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21%이다. 즉 응답자 5명 가운데 1명이 불량국가를 위해서 WMD 분야에서 일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sup>95</sup>-Richard Stone, “News focus,” *Science*, January 13, 2006, p.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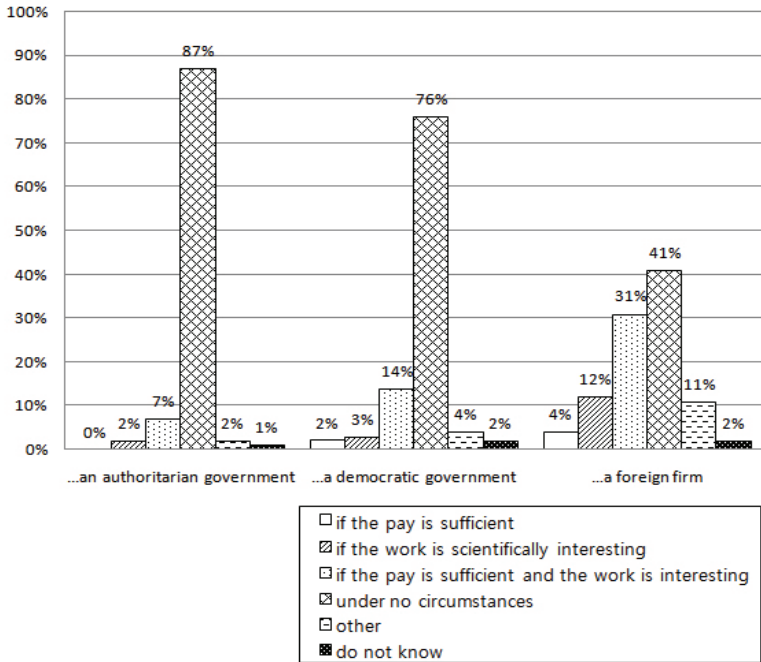
<sup>96</sup>-Deborah Yarsike Ball and Theodore Gerber, “Russian scientists and rogue states: does Western assistance reduce the proliferation threa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4 (Spring 2005), pp. 50~77.

● 그림 IV-1 다른 나라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WMD 과학자 분포: 러시아



어떤 조건하에서 WMD 혹은 이중용도에 관련된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외국회사가 요청할 경우 응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림 IV-2> 참조). 예를 들어, 외국의 독재국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87%이고, 민주국가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대답은 76%였지만, 외국의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1%로 줄어들었다. 요청대상과 관계없이 봉급이 충분하고 일이 흥미있는 경우에 요청에 응할 수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독재국가: 7%, 민주국가: 14%, 외국회사: 31%).

● 그림 IV-2 WMD·이중용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러시아



러시아 WMD 과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전체 WMD 과학자의 20%(5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북한,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 불량 국가에서 일할 수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많은 과학자들이 외국회사가 요청할 경우 WMD 혹은 이중용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이들이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사실을 악용한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가 외국회사를 중계지로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I  
II  
III  
IV

## (2)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과학기술연구센터(STCU)에서 혜택을 받는 과학기술자들은 주로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 출신들인데,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CTR 관련 전문가를 추방하거나 비자를 금지하고 스파이라고 모함하는 등 작업방해를 많이 했다고 한다. CTR 지원을 받는 러시아의 수백 개 연구소들은 상위 조직이 어떤 기구냐에 따라서 CTR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예를 들어, Academy of Science에 속한 연구소들이 가장 우호적이었고, 국방부 산하 기관들의 경우 접근하는 데 가장 애로가 많았다.

2006년 10~12월 우크라이나의 7개 도시에 소재한 26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1,009명의 과학자(물리·화학·생물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CTR 프로그램이 이들의 의식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sup>9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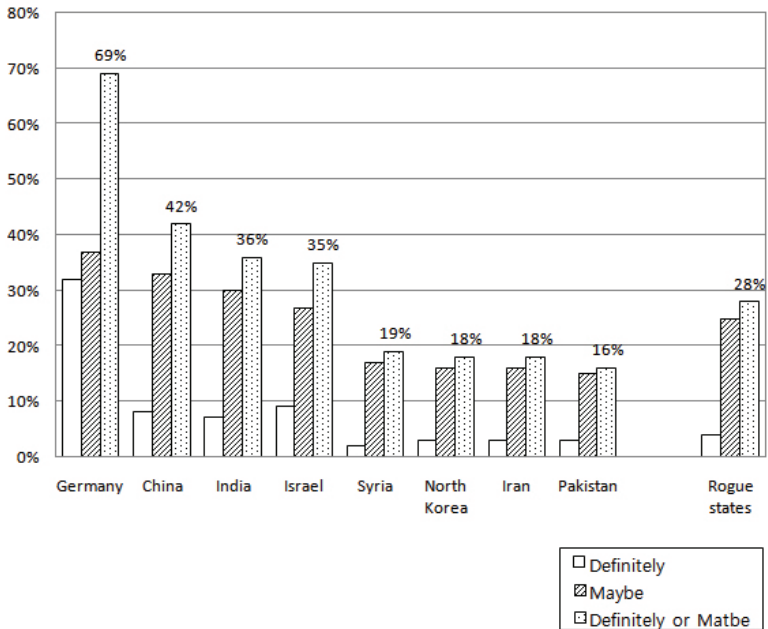
1,009명의 조사 대상자(WMD 관련 과학자)들 가운데 독일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과학자들은 전체의 69%였고, 그 다음은 중국(42%), 인도(36%), 이스라엘(35%) 순으로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생활여건이 좋은 독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림 IV-3> 참조). 그 다음 시리아(19%), 북한(18%), 이란(18%), 파키스탄(16%)의 순이었고, 불량국가(시리아, 북한, 이란 가운데 한 나라)에서 직업을 가질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28%이다. 즉 응답자 3.5명 가운데 1명 이상 불량국

---

<sup>97</sup>-Deborah Yarsike Ball and Theodore Gerber, "A survey of Ukrainian scientists: assessing proliferation risk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TCU," presented to the 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Office of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September 28, 2007.

가를 위해서 WMD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젊은 남성이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불량국가에서 일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다른 나라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WMD 과학자 분포 : 우크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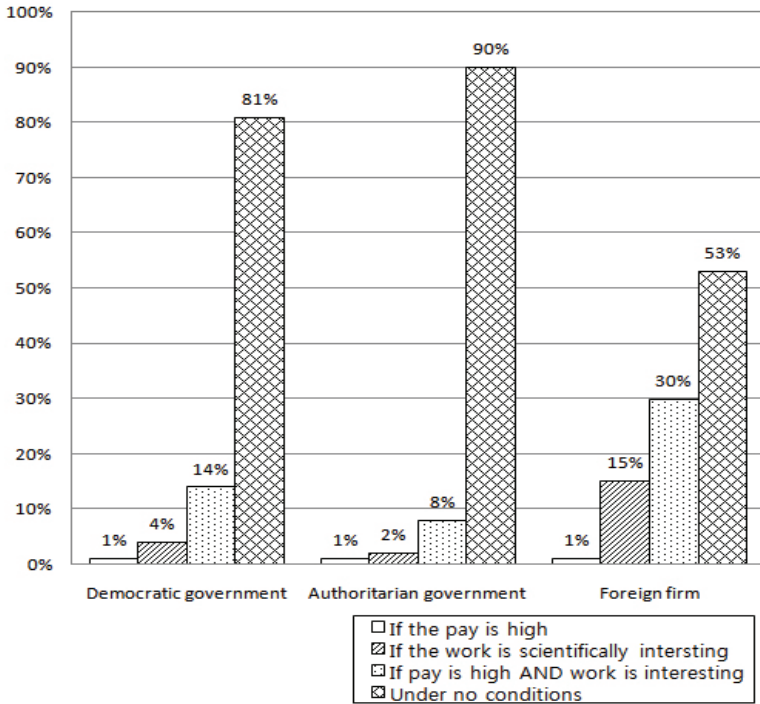
어떤 조건하에서 WMD 혹은 이중용도에 관련된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에서와 같이 외국회사가 요청할 경우 응할 수 있다는 대답이 많았다(<그림 IV-4> 참조). 예를 들어, 외국의 독재국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81%이고, 민주국가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대답은 90%였지만, 외국의 회사가 요청하는

I  
II  
III  
IV



경우에는 일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3%로 줄어들었다. 역시 러시아와 동일하게, 요청대상과 관계없이 봉급이 충분하고 일이 흥미 있는 경우에 요청에 응할 수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독재국가: 14%, 민주국가: 8%, 외국회사: 30%).

●그림 IV-4 WMD·이중용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과학기술연구센터, 즉 STCU가 우크라이나 출신의 과학자들이 자립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68%가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프로젝트 책임자의 긍정적인 답변(73%)이 단순 참여자(6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IV-1> 참조). 그러나 프로젝트 책임자와 참여자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 표 IV-1 STCU가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었는가?

	전체 응답자	프로젝트 책임자	프로젝트 참여자
Very	12%	15%	11%
Somewhat	56%	58%	55%
Not very	24%	23%	24%
Not at all	4%	2%	4%
Hard to say	5%	1%	5%

STCU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각종 활동 가운데 무엇이 가장 유익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연구비 지원(9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회의 개최(69%), 여행경비 지원(66%) 등의 순이었다(<표 IV-2> 참조).

표 IV-2 유익했던 STCU 프로그램은?

	Very useful	Somewhat useful	Not useful	Haven't heard of it
Research grants	90%	8%	0%	2%
Conferences	69%	19%	2%	10%
Travel grants	66%	20%	4%	11%
Partnership program	65%	20%	2%	14%
Seminars	57%	26%	4%	13%
Workshops	56%	26%	4%	14%
Targeted learning courses	47%	21%	6%	26%
Scientific libraries	47%	15%	5%	34%
Patents Support	45%	29%	8%	18%

## 나. 구소련 CTR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한 연구에서는 미국이 구소련에 대한 CTR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sup>98</sup>

첫째, 정치적인 관심의 부족이다. CTR 이행과정에서 집행국과 대상국 모두 CTR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지지의사 표시가 말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러시아정부는 CTR의 원활한 이행을 빈번히 가로막은 내부보안과 관료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저했다. 미국의 경우, 정치적 관심의 부족은 예산의 제한이나 규제, 부처 간 다툼, 이행 지연 등의 현상을 유발했다. 부패한 러시아의 시스템에서 미국이 지원한 돈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해체비용을 조달받으면서 다

<sup>98</sup>-Kenneth Luongo and William Hoehn III, "Reform and expansion of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rms Control Today*, Vol. 33 (June 2003), pp. 11~15.

른 한편으로, 계속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 CTR 반대파들은 CTR 이행을 방해하는 법적, 절차적 장애물을 조성하거나 CTR 사업이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도록 유도하기도 했다.<sup>99</sup>

둘째, 접근과 투명성의 문제이다. 대상 시설에 대한 접근제한과 관련정보의 투명성 부족은 만연한 문제점이었다. 접근과 투명성에 대한 서방의 요구에 대해 러시아 측은 ‘사실상의 간첩행위’(virtual espionage)라는 의구심을 가졌고, 이는 역으로 미국 측의 분노와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했다. 한편, 러시아가 CTR에 대해서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흥미롭다. 예를 들어, 이바노프 국방장관은 러시아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호는 불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다른 러시아 관리들은 CTR과 G8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러시아가 G8 프로그램의 모든 기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100</sup> 군사적으로 민감한 시설에 대한 CTR 차원의 접근을 막으려 한 반면에 CTR이 제공하는 재정적 혜택은 최대한 누리겠다는 이중적인 생각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통합된 전략과 관리의 부재이다. CTR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책임자를 두고 통합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CTR 관련 전략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초당적 요구는 미국 내에서 계속 거부되었다. 사안의 중요성이 대통령에 대

<sup>99</sup>-Rose Gottemoelle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beyond Russia,” *Washington Quarterly*, Vol. 28, No. 2 (Spring 2005), pp. 145~146.

<sup>100</sup>-*Ibid.*, p. 149.

I
II
III
IV

한 직보가 필요한 만큼 무게가 나간다고 보지 않은 것 같다.

넷째, 인력전환 문제이다. WMD 개발에 관련된 과학기술자들을 평화적인 분야로 재투입하는 데 사용된 두 가지 전략, 즉 연구계약과 상업화 시도는 충분한 직업전환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계약은 그 기간이 보통 3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자들이 계약을 따낸다 할지라도 그 신분은 임시직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상업화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러시아 체제의 특성상 창업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도 상업화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섯째, 재원마련 문제이다. 재원은 CTR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미국 내에서는 CTR 프로그램에 돈을 대는 것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존재했고, 반대하는 측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산삭감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에너지부 장관이 구성한 초당적 위원회가 작성한 연구 결과인 「베이커-커틀러 보고서」(Baker-Cutler Report)는 CTR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미국이 향후 8~10년 간 300억 달러의 돈을 CTR 프로그램에 지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sup>101</sup>

## 다. 미국의 의도와 경험

### (1) 미국이 CTR을 추진하는 의도와 목적

미국이 CTR을 추진하면서 달성하려는 목적은 ‘경성안보’(hard

---

<sup>101</sup>-Howard Baker and Lloyd Cutler, *A Report Card on the Department of Energy's Nonproliferation Programs with Russi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Energy, January 10, 2001), p. A-1.

security)와 ‘연성안보’(soft security)의 동시 확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102</sup> 경성안보의 달성이란 핵무기와 관련 기술, 장비 및 지식의 확산이 야기하는 통상적인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05년 미국의 Century Foundatio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미국의 우방에 호전적인 국가나 집단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파악되었다. 또한 핵확산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이 모두 응답자들의 5대 관심 사항에 꼽히는 등 핵확산과 핵테러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CTR은 경성안보를 달성함으로써 핵확산과 핵테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CTR의 정당성은 핵물질, 핵탄두 및 핵테러를 금지하는 ‘核三不’ 정신에 있다.<sup>103</sup> 북한 비핵화의 경우 미국이 핵기술자의 인적 전환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핵개발 기술과 정보가 제3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성안보는 핵 관련 하부구조의 해체와 인적, 물적 전환과정에서 CTR 대상국가에게 경영관리, 마케팅, 금융기술, 품질관리, 회계감사 등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경영기법을 전수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달성된다. 즉 CTR 대상국과 국제사회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제규범에 순응하고 국제사회에 위협적인 행동

<sup>102</sup>. Brian Finlay and Elizabeth Turpen, *25 Steps to Prevent Nuclear Terror: A Guide for Policymakers* (Washington, D.C.: The Henry Stimson Center, 2007), pp. 7~8.

<sup>103</sup>. “No nuclear material. No bomb. No nuclear terrorism.” Graham Allison, “How to stop nuclear terror,” *Foreign Affairs*, Vol. 83, No. 1 (January/February 2004), pp. 64~74.

을 하지 못하도록 체제의 성격변화를 유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보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단체(예를 들어, National Academy of Science)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에 관심을 갖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의 하나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가 진행되면서 북핵문제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망한 분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정치·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핵무기와 기술의 확산 예방 및 핵테러 위협 차단과 전환과정에서의 체제변화 유도에 관심을 두고 있고, 관련 연구소나 개인들은 북한 비핵화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간주하고, CTR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사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경제적인 이익도 획득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CTR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미국은 CTR 이행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적절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실패했고 프로그램 관리에 융통성이 없었다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sup>104</sup> ① 부처 간 협력 부족, ② 대상국가의 비현실적인 기대감, ③ 비효율적인 의회의 감독, ④ 지나치게 과도한 의회의 규제, ⑤ 인적 전환에 대한 광범위한 장애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치가 제안되었다.<sup>105</sup> 첫째, 부처 간

---

<sup>104</sup>- Brian Finlay and Elizabeth Turpen, *25 Steps to Prevent Nuclear Terror: A Guide for Policymakers*, p. 9.

<sup>105</sup>- *Ibid.*, pp. 13~27.

협력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부처 간에 그리고 국제적으로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CTR 출범 초기에는 구소련의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동안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CTR이 변화된 상황과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여 활동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CTR 관련 정보는 국무부에서 총괄하고, 예산집행은 백악관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인 이견조율은 NSC에서 담당하는 3두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미국의 과도한 약속이 대상국가의 지나친 기대감을 유발했지만 예산의 제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서 CTR 이행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집행국과 대상국 간의 신뢰가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상호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서 위협인식과 추구하는 목표 등에 대한 CTR 대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집행국이 CTR 이행과정에서 대상국의 민감한 시설을 방문하는 만큼 호혜적 차원에서 대상국이 집행국의 상응하는 민감한 시설을 방문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방적인 정보의 노출이나 간첩행위에 대한 우려를 상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CTR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이 중요하므로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CTR과 다른 외교정책 간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셋째, 비효율적인 의회의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감독

I

II

III

IV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CTR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지만 CTR의 성격상 계량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모두 의회가 요구하는 보고양식을 따르는 데 과도한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즉 CTR의 노력과 성과를 일일이 확인하려는 의회의 태도가 장애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넷째, 의회의 감독과 해당 부처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면서 CTR 프로그램 본래의 유연성을 위협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수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인력전환 과정에서 광범위한 장애물이 존재했다는 문제제기이다. CTR의 어떤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서 과학기술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ISTC와 STCU의 경우, 과학자들을 단기적으로 묶어두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STC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동안 과거 무기개발의 산실이었던 연구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외부의 접근이 제한되고 결국 상업화의 기회가 상실되는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또한 많은 경우에 STC에서 지원한 프로젝트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고 결과물도 신통치 않았다. 이들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제한한 것은 미국 의회로 하여금 미국이 지원한 예산이 다시 무기개발로 전용된다는 의구심을 야기하고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 (3) CTR 관련 상황의 변화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는 지난 15년 간 CTR 프로그램을 가동 해오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안보환경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06</sup> 첫째, 테러집단이나 제3국이 매력을 느낄만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의 범위가 무기개발 과학자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넓어졌다. 둘째, 불법적인 확산에 가담하는 개인적인 동기가 경제적 이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며, 특히 러시아의 경제가 호전됨에 따라서 경제적인 동기 이외의 탐욕, 이념적 동질감, 우월감 등이 불법확산의 동기가 되고 있다. 셋째, 세계적인 통신·통행·이동수단의 발달로 불법확산이 가능한 경로가 다양해졌다. 넷째, WMD를 원하는 수요자가 국가에서 테러집단으로 확대되면서 첨단제품이 아니더라도 매력을 느끼는 테러집단에 의해 확산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특히 랜드연구소는 확산우려를 야기하는 인적자원의 확대와 관련,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인적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sup>107</sup>

- Type I: WMD 개발의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소유한 시설책임자 혹은 책임과학자
- Type II: WMD 개발과정 상의 특정분야에 중요한 지식을 소유한 과학기술자
- Type III: 특정 기술을 소유한 기술자(예: 원심분리기 제조·가동기술자, 핵탄두 제조기술자 등)
- Type IV: 시설과 연구소의 관리자 및 보안요원 등 지원인력
- Type V: 은퇴하거나 전직한 과학기술자

<sup>106</sup>- John Parachini, et al. (eds.), *Diversion of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Expertise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05), pp. 7~8.

<sup>107</sup>- *Ibid.*, pp. 18~19.



불법확산을 부추기는 동기에 대해서도 랜드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제시했다:<sup>108</sup> 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② 탐욕, ③ 직무상의 부당 이득 추구, ④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연루, ⑤ 이념적 호감도, ⑥ 개인적인 우월감 등. 반면에 불법확산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는 다음 사항들을 제시했다:<sup>109</sup> ① 애국심, ② 일에 대한 자부심, ③ 경제적 이득, ④ 과학계 내의 동질감, ⑤ 모국에 남고 싶은 바람, ⑥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⑦ 막중한 후과에 대한 공포감 등.

## 2. 북핵폐기 관련 쟁점사항

### 가. 북한의 핵포기 형태 시나리오

2차 핵실험으로 북한 지도부의 핵보유 의지가 분명하게 확인됨으로써, 향후 북핵폐기 과정은 북한정권 내부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핵을 체제유지의 보루로 생각하는 북한정권에 특단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구소련식의 평화적인 핵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으로,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화의 진실성과 규모 그리고 지속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핵폐기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핵폐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북한 내부에서 무장봉기나 민란 등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핵무기와 관련 물자를 통제하기 위한 조

<sup>108</sup>- *Ibid.*, p. 33.

<sup>109</sup>- *Ibid.*, p. 33.

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폐기 시나리오는 크게 북한에 의한 자발적 핵포기가 가능한 경우와 국제사회의 주도로 강제적 핵폐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두 시나리오 별로 각각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면 아래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V-3 북한의 핵포기 시나리오

자발적 핵포기	강제적 핵포기
북핵폐기 협상성공 : 우크라이나 방식, 한국역할 미약	협상실패 : 북한의 대남도발, 핵확산· 핵탄두·핵물질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 한·미 공동작전 필요
친서방 정권교체 : 우크라이나 방식, 한국역할 보통	
남한 주도의 평화통일 : 우크라이나 방식, 한국역할 강화	급변사태 발생 : 북한내부 혼란·핵탄두·핵물질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 한·미 공동작전 필요

### (1) 자발적 핵포기 시나리오

자발적 핵포기 시나리오는 북핵폐기 협상이 성공하거나 북한에서 친서방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경우 그리고 남한 주도의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경우의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협상이 성공하는 경우는 기존의 6자회담이던 아니면 북·미 양자회담이나 남·북·미 3자회담 혹은 남·북·미·중 4자회담 등 협상을 통해서 북한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시나리오이다. 김정일 본인의 결단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김정일 사후에 김정일의 권력을 승계한 새로운 집권층의 결심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회담형식이나 북한의 지도부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북한정권이 회담을 통해서 핵포기 결정을



내리고 핵폐기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북한 비핵화가 완수되는 시나리오이다.

핵을 포기하더라도 정권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핵폐기의 대가로 상당히 많은 정치·경제·안보적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남북 간의 경쟁적 대결구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정부가 핵포기 대가로 북한에게 한반도 정전체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한국의 안보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정도의 과도한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런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미국에 의해 한반도가 재분할되었고 통일이 더욱 요원해졌다는 강력한 비판이 우리 사회에서 제기될 것이며, 한·미동맹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 구소련, 특히 우크라이나에 적용되었던 핵폐기 방식을 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북핵폐기 과정에서 비핵국인 한국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에 들어선 새로운 정권이 서방에 우호적이고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핵폐기에 나서는 시나리오이다. 구체적으로, 내부정변, 민중봉기, 쿠데타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이 제거되고 서방에 우호적인 새로운 정권이 등장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속한 핵폐기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새로운 정권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정치적 보상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를 토대로 경제적 실익과 안전보장이 제공됨으로써 안심하고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외부의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우, 김일성·김정일 부자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권인 만큼, 정치·군사적 대결보다는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

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달리 미국의 대북한 안전보장에 대해 한국이 덜 민감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새 정부도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안전보장을 미국에 요구함으로써 대남우위를 확보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기술적 차원에서 구소련, 특히 우크라이나에 적용되었던 핵폐기 방식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폐기 과정에서 비핵국인 한국의 역할은 크지 않겠지만, 남북관계가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만큼, 핵무기를 제외한 핵시설 해체, 환경정화, 인력전환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북한 합의하에 남한 주도의 평화통일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북핵폐기가 완수되는 시나리오이다. 급변사태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남한이 불가항력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갑작스런 통일이 발생하거나, 김정일을 대체한 새 정권이 독자노선을 고집하는 대신에 남한과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 어떤 경로를 따르던 관계없이, 남한 주도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평화통일이 추진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통일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이전에 북한 비핵화를 완성하는 시나리오이다.

북핵폐기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동기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라는 정치적 보상과 북한재건 및 남북통합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외부의 경제적 지원이다. 통일된 비핵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지속하는 것과 더불어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통일한국에 대해 ‘핵불위협·불사용 보장’을 명문화하는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적 차원에서 구소련, 특히 우크라이나에 적용되었던 핵폐기 방식을 따르고, 북핵폐기 과정에서 비핵국인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I
II
III
IV

전망된다.

남한 주도의 평화통일이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입지가 엄청나게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통일한국을 책임질 한국정부의 입장이 쉽게 무시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비핵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철저한 북핵폐기를 위해서 핵폐기 전 과정에 대한 참여와 감독을 요구한다면, 핵시설 해체, 환경정화, 인력전환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폐기과정에도 참여해서 북한 비핵화의 완료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주도세력으로서 남한이 북한 비핵화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치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 (2) 강제적 핵포기 시나리오

강제적 핵포기 시나리오는 북핵폐기 협상이 실패한 후 북한이 핵확산과 군사도발을 자행하거나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해서 핵탄두와 핵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경우이다.

첫째, 북핵폐기 협상이 실패하고 북한이 군사도발과 핵확산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강제적인 개입이 현실화되는 시나리오이다. 북한의 거부로 6자회담이 사실상 막을 내린 후에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강화하고 핵확산을 야기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해서라도 북핵폐기를 실현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유출한 핵기술과 핵물질이 이란이나 시리아 혹은 알카에다, 하마스, 헤즈볼라, 체첸반군과 같은 집단에게 흘러들

어간 증거가 공개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강제적인 핵폐기 여론이 확산될 것이다.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북·미 양자회담이나 남·북·미 3자회담 혹은 남·북·미·중 4자회담 등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지만 북한이 핵포기를 거부하고 군사도발과 핵확산을 감행함으로써, 협상 무용론이 힘을 얻고 국제사회의 물리적인 개입을 자초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아무리 국제사회의 물리적인 개입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는 군사작전은 북한체제가 견고한 상황에서는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개입은 북한 내부에서 발생할 급변사태와 같은 혼란을 기회로 활용하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작전은 기습적으로 핵탄두와 핵물질 및 핵심 기술자 등 북핵능력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작전이 될 것이다.

강제적인 핵폐기인 만큼 북한정권에 대한 정치·경제·안보적 보상은 없을 것이며, 구소련의 핵폐기 방식도 적용할 수 없는 시나리오이다. 오히려 군사작전에 수반되는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에 미군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정권의 군사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군사작전 이후에 북한에 남는 잔여 핵능력과 핵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폐기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역시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능력의 외부유출을 우려하는 여론이 조성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개입에 의한 핵통제가 이뤄지는 시나리오이다. 북한정권이 급변사태의 초기 진압에

I

II

III

IV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권의 사회장악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핵확산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세력이 북한정권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요 핵물질과 기술은 물론 핵탄두까지 탈취해서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동의하에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핵심 핵물질과 핵탄두를 제거하는 시나리오이다. 군사작전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가 동인이긴 하지만 역시 강제적인 핵폐기인 만큼 북한정권에 대한 정치·경제·안보적 보상은 없을 것이며, 구소련의 핵폐기 방식도 적용할 수 없는 시나리오이다. 군사작전은 기습적으로 핵탄두와 핵물질 및 핵심 기술자 등 북핵능력을 제거하는 작전이 될 것이다. 군사작전에 수반되는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에 미군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정권의 군사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유엔 등에서의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것이다.

핵능력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 수 있을 정도의 급변사태는 북한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과 연계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군사작전 이후에 북한에 남은 잔여 핵능력과 핵시설의 경우, 급변사태가 진정된 후 세 가지의 자발적 핵포기 시나리오에 따라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폐기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나. 한국의 역할과 비용분담

### (1) 역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2005년에 6자회담과 북한 비핵화에 대해 수행한 연구에서 북핵폐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① 기술적 능력, ② 재정적 능력, ③ 정치적 의지, ④ 핵폐기 경험.<sup>110</sup> 각 기준에 대해서 6자회담 당사국인 다섯 개 나라와 유럽연합(EU)의 참여 수준과 동기를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V-4 미국 CSIS의 각국 역할 도표

기준 국가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정치적 의지	핵폐기 경험
미국	매우 높음	중간	중간	매우 높음
한국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중국	높음	중간	중간	낮음
일본	높음	높음	중간	중간
러시아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유럽연합	높음	낮음	낮음	중간

CSIS의 연구는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핵폐기 경험과 기술이 많은 미국은

<sup>110</sup>- Joel Wit, et al. (eds.),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5), p. 33.

북핵폐기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재정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정치적 의지와 재정적 능력이 많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핵폐기 기술과 경험이 떨어진다고 분석하였다. 쉽게 얘기해서, 재정부담은 한국이 지더라도 직접 핵폐기를 실행하는 주체는 미국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대한 관련국들의 예상되는 입장을 고려하고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표 IV-5>에서와 같이 새로운 역할 도표를 제시했다.<sup>111</sup>

● 표 IV-5 북핵폐기·검증과정에서 각국의 바람직한 역할

기준 국가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정치적 의지	핵폐기 경험	문화적 친밀성	법적 정당성
미국	매우 높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낮음	중간
한국	중간	중간	높음	낮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중국	높음	중간	높음	낮음	중간	중간
일본	높음	중간	높음	중간	중간	중간
러시아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중간
유럽연합	높음	중간	높음	중간	낮음	중간

우선 각국의 재정적 기여도를 동일하게 중간 수준으로 잡았다. 2·13 합의의 부속문서인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감안한 것이다. 이 합의의사록에 의거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서 대북 증유지원이 이뤄졌

<sup>111</sup> 전성훈, 『북핵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KINU 정책연구시리즈 07-08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46.

다.<sup>112</sup> ‘동등한 비용분담’을 약속한 이 원칙은 앞으로 북핵폐기 과정에서도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북핵폐기에 대한 정치적인 의지는 모두 높다고 보았다. 북한 핵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9·11 테러 이후 핵무기를 포함한 WMD의 확산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들 사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인 의지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적 친밀성과 법적 정당성 두 가지 요건에서는 한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과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서 동질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한국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적 정당성이란, 한국이 대한민국 헌법상 자국영토로 규정된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핵폐기와 핵시설 해체 및 이에 대한 검증 상황을 상세하게 인지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북한 비핵화는 남북통일의 전제조건이자 평화통일 과정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헌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역할을 보장받는 것은 통일한국의 주도세력이 한국이라는 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인을 얻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기술적 참여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환경정화나 핵시설 해체

---

<sup>112</sup> 6자회담 참가국들은 2·13 합의에 의거해서 100만 톤 상당의 중유와 에너지 관련 설비 및 기자재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에게 할당된 20만 톤을 제외한 대부분이 북한에 제공되었다.

I
II
III
IV

의 경우 소규모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한 것 외에 풍부한 경험이 없고, 핵무기의 경우에는 개발 경험자체가 없는 실정이므로 기술적 참여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핵무기의 경우에는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핵비확산 차원에서 비핵국인 한국의 활동 영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 해체에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기여할 수도 없고, 설사 참여한다고 해도 핵무기 관련 정보를 특별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 분해에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의 경수로사업처럼, 미국이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영변 원자로 해체의 경험을 한국의 노후화된 원자로의 해체에 활용할 수 있고, 재처리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고준위폐기물 저장소를 북한에 건설해서 남한도 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술적 능력이 핵무기 폐기와 핵시설 해체에 참여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설혹 한국의 기술력이 미흡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와 해체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참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세계 6대 원자력 대국으로서 한국이 축적한 역량을 활용한다면 기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북한 원자력기술자들을 평화적인 분야에서 재교육하고 재취업시키는 문제에서는 한국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은 이미 북한 KEDO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원자력기술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교육과

학기술부는 해외에 원자력 상품을 수출하고 교육시키는 일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 (2) 비용의 종류와 사례

북한 비핵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핵무기 분해와 핵시설 해체를 감독하고 검사하기 위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검증비용이다. 둘째, 핵폐기(탄두분해와 시설해체)와 환경오염 정화에 소요되는 폐기·정화비용<sup>113</sup>이다. 셋째, 에너지 및 경제지원 등 핵폐기 대가로 북한에 지불하는 보상비용이 있다.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부분은 물론 보상비용이지만 이는 보다 큰 틀의 정치·외교적인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고 북핵폐기 시나리오의 전개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증비용의 경우, 2·13 합의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의거해서 검증에 참여하는 국가와 IAEA가 역할에 맞게 균등하게 부담하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폐기·정화비용의 경우,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문제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라는 이유로 한국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전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비핵화의 장래가 불확실한 현 단계에서 비용을 추정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비핵화의 대상과 방법, 기간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할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핵화의 준비를 위한 자료로서 여러 가지 추정치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시설을 해체하며 과학기술 인력을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

<sup>113</sup> 폐기·정화비용에는 기존 시설의 해체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영변에서 생산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비용도 포함될 것이다.

I
II
III
IV

는 전체적인 비용과 관련해서는 근거로 삼을 만한 몇 가지 추정치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총 2~5억 달러,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하버드대학교의 카터(Ashton Carter) 교수는 십년 간 매년 수천만 달러, 사이언스지 기자인 스톤(Richard Stone)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최대 5억 달러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sup>114</sup> 아래에서는 검증비용, 핵탄두 분해비용 및 핵시설 해체비용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sup>115</sup>

### (가) 검증비용

검증비용의 경우, 검증기구의 구성방식과 검증형태 그리고 핵시설 해체 방식과 기간에 따라 추산되는 비용의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기구의 운용과 사찰에 소요되는 검증비용은 ‘유엔특별위원회’(UN Special Commission: UNSCOM)의 경험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UNSCOM은 1998년 말까지 이라크 전역에 대한 활발한 사찰활동을 벌였으며 평균 900여 명의 인력을 고용했었다.<sup>116</sup> 이 가운데 200여

---

<sup>114</sup>- Joel Wit, et al. (eds.),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orth Korea*, p. III; Ashton Carter, “Implementing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with North Korea,”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 Senate, July 15, 2004, p. 4; Richard Stone, “News focus,” p. 170.

<sup>115</sup>- 다음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Cheon Seongwhun,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6), pp. 109~115; 전성훈,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찰·검증 전략,” 박기덕·이상현 공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성남: 세종연구소, 2007), pp. 246~250.

<sup>116</sup>- *UNSCOM's Comprehensive Review* (Monterey: Montere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1999), <[http://www.cns.miis.edu/research/iraq/ucreport/mon\\_intr.htm](http://www.cns.miis.edu/research/iraq/ucreport/mon_intr.htm)>.

명은 사찰관, 전문인력, 정책담당관, 지원인력 및 항공기 승무원 등 상주인력이었고, 나머지 700여 명은 사찰을 목적으로 수시로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는 비상임 인력이었다. 대부분의 인력들은 UN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파견했거나 UNSCOM에 차출된 유엔의 직원들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국가와 유엔이 담당했다. UNSCOM은 이들의 여행경비와 이라크 현지에서의 활동비용만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연간 3,500만 달러 정도의 예산을 지출했다. UNSCOM은 이라크에서 사찰이 지속되고 모든 인력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총 300여 명의 상주인력과 400여 명의 임시인력이 필요하고, 연간 7,500만 달러(인건비 5,000만 달러, 통신, 여행 등 제잡비 2,5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었다.

이라크의 면적이 434,920 평방km이고, 한반도의 면적이 약 220,000 평방km(남한 98,500/북한 121,500)임을 감안할 때, 이라크가 한반도의 두 배 정도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라크에 투입되었던 정도의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북한 영토의 규모가 이라크의 1/4 정도이므로,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국제사회에서 지원된다면 1990년대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900만 달러, 자체적인 인건비 조달이 필요하다면 연간 1,9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검증당사국의 담당기구 소요비용을 알아보는 데는 미국이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INF 조약)의 폐기와 검증을 목적으로 창설한 ‘현장검사처’(On-site Inspection Agency: OSIA)의 운용비용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1988년부터 1996년까지 OSIA는 「군비통제조약」의 이행상황을 검증하는 데 모두 4억 4천 5백만 달러를

I
II
III
IV



지출했는데, 예를 들어, 『INF 조약』에 2억 3천 3백만 달러, 『START I 조약』에 1억 5백만 달러, 『핵실험부분금지조약』에 7,600만 달러를 지출했다.<sup>117</sup> OSIA는 『INF 조약』이 발효된 1988년 6월 1일부터 3년 동안 총 2,692기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의 폐기과정을 검증했고, 이후 2001년 5월 말까지 10년 간 조약의 이행상황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OSIA는 1989년, 1990년, 1991년 3년 간 매년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신청했었다.<sup>118</sup>

#### (나) 핵탄두 분해비용

핵탄두 분해비용은 미국의 경험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전체비용 가운데 『군축조약』에 의거해서 또는 노후화로 인해 폐기되는 핵탄두의 처리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40~1996년 핵무기 프로그램(제조·배치·운용·관리·해체 등)에 총 5조 8천 2백 10억 달러가 소요되었는데, 이 가운데 탄두폐기비용은 0.5%인 311억 달러에 불과했다.<sup>119</sup>

핵탄두 폐기비용은 설계의 복잡성과 폭발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미국은 Pantex과 Y-12 두 개의 핵탄두 폐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 시설에서 폐기된 핵탄두의 수는 1995년에 1,393개, 1996년에 1,064개였다.<sup>120</sup> 에너지부는 두 시설의 운영에 각각 6억 4천

<sup>117</sup>- Arjun Makhijani, "Dismantling the bomb," in Stephen Schwartz, *et al.* (eds.), *Atomic Audit: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U.S. Nuclear Weapons since 1940*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8), p. 339.

<sup>118</sup>- Lewis Dunn and Amy Gordon, *Arms Control Verification & the New Role of On-Site Inspection* (Lexington: Lexington Books, 1990), p. 245.

<sup>119</sup>- Stephen Schwartz, *et al.* (eds.), *Atomic Audit: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U.S. Nuclear Weapons since 1940*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8), p. xxii.

2백만 달러와 6억 9천만 달러를 지출했으며,<sup>121</sup> 이 가운데 2/3 정도(각각 4억 2천 8백만 달러, 4억 6천만 달러)가 폐기와 저장임무에 집행되었다. Pantex과 Y-12의 예를 따르면, 핵탄두 하나를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1995년에 30만 7천 달러, 1996년에 43만 2천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개수를 10~20개로 가정할 때, 이들 핵탄두를 미국의 두 시설에서 분해할 경우 1990년대를 기준으로 할 때, 총 3백~9백만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 (다) 핵시설 해체비용

핵시설 해체비용은 기존 사례를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시설 해체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작업은 5MWe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을 해체하는 것이다. 미 워싱턴주 핸포드(Hanford)에 위치한 425MWth, 즉 85MWe 규모의 흑연감속로를 해체하는 데 2,500만 달러가 소요되었는데, 1MWe당 30만 달러 정도가 든 셈이다.<sup>122</sup> 미국 쉐핑포트(Shippingport)의 72MWe급 경수로를 해체하는 데는 총 9,100만 달러가 소요되었다(1MWe당 126만 달러).<sup>123</sup> 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자로 해체비용은 통상 1MWe당 100만 달러 정도가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5MWe 원자로를 해체하는 데 어렵

<sup>120</sup>- Arjun Makhijani, "Dismantling the bomb," p. 332, note 14.

<sup>121</sup>- *Ibid.*, pp. 332~335.

<sup>122</sup>- Michael May, et al. (eds.), *Verifying the Agreed Framework* (Livermore: Center for Global Security Research, 2001), p. 76.

<sup>123</sup>- <[http://mext-atm.st.go.jp/atomica/owa/fig\\_img?fig\\_path=/images/05/05-02-01/01.gif](http://mext-atm.st.go.jp/atomica/owa/fig_img?fig_path=/images/05/05-02-01/01.gif)>.

잡아 최소 1백 5십만 달러에서 최고 6백 3십만 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sup>124</sup> 건설이 중단된 50MWe와 200MWe 원자로는 해체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OECD/NEA는 원자로의 형태에 따라서 해체비용을 아래 <표 IV-6>과 같이 추산했는데, 흑연감속로의 해체에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본의 Tokai-1 원자로를 폐기물 처리부지 비용까지 합산한 것이다).<sup>125</sup> 영국의 MAgnox 원자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5MWe 원자로 해체에 최대 1,300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표 IV-6 원자로 유형별 해체비용

원자로 유형	해체비용 (US \$/KWe)
Pressurized 경수로	200~500
VVER	330 이상
Boiling 경수로	300~550
CANDU	270~430
영국 MAgnox	2,600 이하
Tokai-1	4,700 이하

재처리시설을 해체하는 데는 원자로의 경우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210톤의 우라늄을 재처리했던 벨기에의 재처리시설을 해체하는 데 총 2억 3천 5백만 달러가 소요되었으

<sup>124</sup> 핵시설 해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Whang Joohe, *Dismantlement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f DPRK Nuclear Facilities*, CMC Occasional Paper (Albuquerque: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2005). 전 세계적으로 90여 기의 상업용원자로, 250기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및 다수의 핵연료주기시설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가동 중단되었다. *Ibid.*, p. 19.

<sup>125</sup> *Ibid.*, p. 22.

로 영변 재처리시설이 벨기에의 재처리시설과 거의 비슷한 규모(연간 처리능력 220톤)임을 감안할 때, 해체비용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벨기에 시설의 경우 영변에 비해 훨씬 많은 우라늄을 재처리해서 오염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했으므로 영변 재처리시설의 해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이다.

## 다. 추진방식과 인력전환

### (1) 추진방식

북한 비핵화를 위한 추진방식이란 참여주체를 누구로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 IAEA
- IAEA + 미국
- IAEA + 미국 + 중국
- IAEA + 미국 + 중국 + 러시아
- 미국 + 중국(관련 핵보유국만 참여)
- 미국 + 중국 + 러시아 (관련 핵보유국만 참여)
- IAEA + 미국 + 남한
- IAEA + 6자회담 5개국(미국 + 남한 + 중국 + 일본 + 러시아)
- IAEA + 6자회담 5개국 + 캐나다, 호주, EU, 카자흐스탄,<sup>126</sup> 남아공 등(북핵폐기에 재정적, 기술적으로 기여하길 원하는 모든 국가들 참여 가능)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IAEA + 미국 + 남한’ 방식이다. IAEA의 참여는 북한 핵문제가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로서 국제사회

<sup>126</sup> 북한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의 Aktau 원자로를 폐쇄한 경험이 있다. Rose Gottemoelle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beyond Russia,” p. 155.

I
II
III
IV

전체의 이익과 관심을 배려한다는 정치적, 외교적인 당위성과 상징성을 가질 것이다. 북한문제가 우리의 안보와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의 참여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참가는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정서와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미국 역시 사찰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하버드대학의 카터 교수는 미국이 CVID를 관철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실시하고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다른 대북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sup>127</sup>

최적의 참여방식은 북핵폐기 시나리오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자발적인 핵폐기의 경우 김정일 정권이 존속된다면 ‘IAEA + 미국 + 남한’ 방식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한국의 참여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거나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이 방식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강제적인 핵포기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핵탄두를 제거한 후 잔여 핵능력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에도 남한에 적대적인 북한 정권은 이 방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 (2) 인력전환

인력전환에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과학기술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조건이지만 현재로서는 추산치가 다양하고 편차도 매우 크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연구는

---

<sup>127</sup>- Ashton Carter, *Implementing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with North Korea*, pp. 4~5.

북한의 핵관련 인적자원의 수가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핵무기 연구개발을 도울 수 있는 핵심 과학자들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sup>128</sup> 미 의회조사국의 닉시는 북한의 핵개발에 종사하는 인력을 3,000명 정도로 추산했고,<sup>129</sup> 강정민 박사는 전체인력을 3,000~6,000명, 핵무기 제조에 관여하는 핵심인력을 200여 명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sup>130</sup>

CSIS는 북한 비핵화의 대상이 되는 인력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 따라서 전환의 내용을 달리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sup>131</sup> 첫째, 핵무기 전문가와 훈련된 요원은 대중 봉사인력으로 활용하면서 교육, 보건 및 기타 기초적인 대민 봉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 둘째, 주요 핵시설의 설계·건설·운용 전문가와 핵탄두 제조기술자는 핵탄두 분해, 핵시설 해체 및 시설전환 활동에 활용한다. 셋째, 원자력 과학기술자들은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군사적 기초연구에 참여하도록 주선한다. 넷째, 일부 과학기술자들은 의료, 농업, 우라늄 광산개발 등 상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남한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CSIS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인력전환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sup>132</sup> 첫째, 평화적인 목적으로 의학·농업·산업용 방사성 동위원

<sup>128</sup>- Richard Stone, “News focus,” p. 170.

<sup>129</sup>- Larry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May 1, 2003), p. 6.

<sup>130</sup>- Kang Jungmin, “Nuclear develop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Korea Conference on *The Six-Party Talks and Korea’s Energy Secur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Atlanta, Georgia, February 26, 2009.

<sup>131</sup>- Joel Wit, et al. (eds.),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orth Korea*, pp. 62~63.

<sup>132</sup>- *Ibid.*, p. IV.

I
II
III
IV

소를 생산하는 다국적 원자력연구센터를 설립한다. 둘째, 북한 과학기술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과학기술연구센터’(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STC)를 국제적인 지원하에 설립한다. 셋째, 북한의 우라늄과 기타 광물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운영한다.

강정민 박사는 영변의 과학자들을 제염·해체와 환경정화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3년짜리 단기대학인 영변 물리대학에 관련 과정을 만들어 교육시킬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제의하기도 했다.<sup>133</sup>

- 핵무기 개발 전문가, 플루토늄 생산 전문가 및 HEU 관련자들의 직업전환은 어렵겠지만, 영변에 근무했던 일반 과학기술자들을 영변 물리대학에서 재교육시키고, 해체·제염 작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적 인프라가 줄어드는 만큼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의 전문가들이 영변 물리대학에서 강의하거나, 북한 사람들을 대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 데려와 교육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영변의 일반 기술자들의 월급이 60~70달러 수준이므로 1인당 연 1천 달러 정도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 해체·제염 작업 준비에만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 조사에 2년, KINS로부터 규제관련 허가를 받는 데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커박사는 2008년 2월 북한을 방문해서 영변 과학자들의 인력전환 문제에 대해서 북한 관리들과 논의했다.<sup>134</sup> 당시 외무성 관리뿐만 아니라 영변원자력연구소장을 역임한 리용섭 등도 지금은 인력전환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핵과학기술

---

<sup>133</sup>- 강정민 박사와의 의견교환, 2008년 3월 14일.

<sup>134</sup>- Siegfried Hecker, “Report of Visit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February 12~16, 2008,”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March 14, 2008, pp. 3~4.

자들을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도 연구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리홍섭은 장래를 위해서 북한의 과학적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으며, 앞으로 경수로가 제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영변인력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해커박사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한다. 즉 핵시설의 제염과 해체에 영변인력 상당수가 필요할 것이며 방사능 오염감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 등에 북한인력이 필요할 수 있고, IRT-2000 원자로를 연구, 의학 및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였다. 해커박사는 보건성, 교육성 관리들과도 핵분야의 협력문제를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경수로에 최우선 관심을 보이면서 현재의 인력을 경수리에 사용할길 희망했다고 하며, 제염·해체, 방사선 방호, 환경정화, IRT-2000 원자로 활용 등 나머지 관심사는 해커박사와 논의과정에서 북한이 추가로 관심을 표명한 의제라고 한다.

### 3. 북한 비핵화 협력방안

#### 가. 기본방향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일이다. 우리가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갖고 있어야만 일관된 정책에 기초한 건설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소련의 협력적 위협감소 사례나 북핵폐기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





한 검토를 토대로 할 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건들은 다음 네 가지로 파악된다: ① 북한 비핵화에 임하는 한국의 목표, ② 한국의 역할, ③ 한국의 부담비용, ④ 북한 비핵화 추진방식.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목표에 따라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떠맡아야 할 부담 그리고 추진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우리의 역량과 대내외 여건에 맞지 않게 설정할 경우 비현실적인 역할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리정부의 결심이 요구되는 네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 비핵화에 임하는 한국의 목표이다. 목표의 범위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두 다섯 가지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범위가 큰 목표는 범위가 작은 목표를 포함하면서 새로운 범위를 추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범위가 작은 목표에서부터 큰 목표의 순으로 다섯 가지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핵무기와 핵능력의 완전 폐기
2. 핵·화학·세균무기 등 모든 WMD의 완전 폐기  
(1 + 세균·화학무기 폐기)
3. 남북관계의 진전과 협력의 증진(2 + 남북관계 진전)
4. 원자력 분야의 통합과 평화통일의 계기로 활용  
(3 + 원자력 통합)
5. 북핵 개발실태에 대한 정보획득 및 한국의 정치·군사적 위상 제고(4 + 정보획득 및 위상 제고)

둘째,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북한 비핵화의 목표가 클수록 한국이 담당해야 할 역할도 커질 것이다. 비핵화의 다섯 가지 목표별로 한국의 역할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폐기가 목표라면, 비핵국인 한국으로서 핵탄두 분해는 핵보유국에게 일임하고 북한 비핵화의 기술적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북한의 모든 WMD를 폐기하는 것이 목표라면, 폐기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한국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제조경험이 없는 핵탄두 보다는 화학무기 혹은 일부 세균무기와 관련해서 한국이 기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의 WMD 폐기는 물론 남북관계 진전까지를 북한 비핵화의 목표로 삼는다면, 한국이 시설·인력의 평화적인 목적으로 전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력전환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이 보상획득을 목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와 같이 인적자원의 경력 등을 조작해서 수혜범위를 부풀리려 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4. 북한 비핵화를 통일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비핵화의 목표가 남북관계 진전에 국한되었던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와 환경의 보존차원에서 영변 등지의 오염된 핵시설을 해체하고 핵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정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북한의 핵개발 정보를 획득하고 한국의 정치·군사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둔다면, 한국은 핵폐기, 특히 핵탄두의 분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와 무형의 정치·군사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무기 폐기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I
II
III
IV

셋째, 다섯 가지 목표별로 한국이 지불해야 할 비용문제이다. 한국이 부담할 비용의 규모는 담당해야 할 역할에 비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 합의에서 채택한 「합의의사록」의 원칙에 따라서, 북핵폐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역할을 많이 할수록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비용의 비례 원칙’도 겸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의 주요 당사국인 한국이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역할·비용의 비례 원칙’에 의거해서 어차피 지불할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의 목표가 클수록 더 많은 역할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추가 비용부담이 수반될 것이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대략적인 내용을 다섯 가지 비핵화의 목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핵무기 폐기가 목표인 경우에는 북한의 핵포기를 촉진하고 설득하기 위한 대북 인센티브 차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핵보유국들만이 참여하는 핵탄두 분해과정에 소요되는 실질비용을 한국이 지불할 필요는 없다.
2.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WMD의 폐기가 목표라면 WMD 포기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의 비용과 더불어 화학무기나 세균무기의 폐기과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3. WMD 폐기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북한 비핵화의 목표로 삼는다면, WMD 포기용 인센티브 및 폐기비용 일부에 더해 시설·인력의 평화적인 목적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시설·인력의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하고, 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북한 비핵화를 평화통일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핵시설 제염·해체 및 환경정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런 비용은 통일비용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재정

- 지출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국회의 동의를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북한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 정보를 취득하고 한국의 정치·군사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면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비핵국가로서 핵탄두의 분해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습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핵개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이중용도 기술개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등 경제·안보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핵폐기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과시하는 대가로 북한 핵과 관계없는 다른 분야에서 정치·외교적인 손실을 감내해야만 할 수도 있다.

넷째, 북한 비핵화 추진방식이다. 북한 비핵화의 목표가 협소할수록 국제사회의 역할이 부각되고 비핵화의 목표가 넓어질수록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는 방식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비핵화의 추진 방식을 다섯 가지 목표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핵무기 폐기를 비핵화의 목표로 삼는다면, 미국과 IAEA 등 국제사회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국제사회는 미국이 구소련에 적용했던 ‘넌-루가’(Nunn-Lugar) 방식과 유사한 형식을 적용하거나 IAEA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형식을 따를 가능성이 많다.
2. 모든 WMD의 폐기를 목표로 한다면, 국제사회의 참여 2/3, 한국의 참여 1/3의 비율로 배분하여 사안별로 한국이 참여하되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다자협의체 형식을 띄게 될 것이다.
3. 북한 비핵화의 목표가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면, 국제사회와 한국의 참여를 각각 1/2로 배분하고, 사안별로 양측이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형식이 가능할 것이다. 추진방식은 역시 다자협의체 형식을 띄게 될 것이다.
4. 만약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평화통일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I
II
III
IV

면, 추진방식은 다자협의체 형식을 따르되 한국의 참여를 2/3, 국제사회의 참여를 1/3의 비율로 배분하고 한국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정보획득과 정치·군사적 위상 제고가 목표인 경우, 추진방식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 형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한국이 핵탄두 폐기에 직접 참가한다고 해도 다른 핵국을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 IV-7 북한 비핵화에 임하는 한국의 기본입장

한국의 목표	한국의 역할	한국의 비용부담	추진방식	타당성
① 핵폐기	핵보유국에 일임	제한된 대북 인센티브 제공	국제사회에 일임	○
			'넌-루가', 다자협의체	
② WMD 폐기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 기여	대북 인센티브 이외에 기술적 폐기비용	국제사회 > 한국	○
			다자협의체	
③ 남북관계 진전	핵시설·인력 전환 기여	남북교류협력 비용차원의 전환비용 추가	국제사회 = 한국	○
			다자협의체	
④ 평화통일의 계기	환경정화 적극 기여	통일비용차원의 환경정화 비용 추가	국제사회 < 한국	×
			다자협의체	
⑤ 정보획득, 정치·군사적 위상 제고	핵폐기에 적극 참여	막대한 정치·경제·외교·안보적 비용 지불	국제사회 > 한국	×
			다자협의체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폐기를 북한 비핵화의 목표로 설정하고 핵탄두의 분해임무를 핵보유

국에 일임하되, 한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제한된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전체적인 비핵화 과정은 ‘넌-루기’ 방식이나 다자협의체를 따르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모든 WMD 폐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도 화학·세균무기의 폐기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분야에서 참여를 하되, 한국은 대북 인센티브와 더불어 WMD 폐기에 참여하는 만큼의 기술적 폐기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추진방식은 국제사회가 주도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삼고 WMD 폐기에 기술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핵시설과 인력의 평화적인 전환에도 기여하면서,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시설과 인력의 전환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되, 다자협의체의 틀 내에서 국제사회와 한국이 대등한 위치에 서서 협력하는 추진방식을 따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15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신평화구상’도 남북관계 진전을 한국의 목표로 삼은 대북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sup>135</sup>

135. 이명박 대통령 제64회 광복절 경축사, 남북관계 부분, <<http://www.president.go.kr>>.

## 나. 세부 추진방안

한·미 양국이 과거의 경험과 교훈 그리고 북한의 특성에 대한 긴밀한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의 세부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1) 구소련 핵폐기 경험을 토대로 한 추진방안

구소련의 핵폐기 경험에 비춰볼 때,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36</sup> 첫째, 북핵폐기에 참여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자국 내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비핵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재정적, 기술적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적 지지기반이 취약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각국의 참여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국들이 자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당국 간 정례회의, 여론홍보를 위한 학술회의 교환 개최, 양국 의회 간의 공동협의 등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북한 핵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한 군비통제협상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북한체제의 내재적인 폐쇄성이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도 구소련 핵폐기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검증조치에 대해 간첩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인 적이 많듯이, 북한도 핵폐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상적인 검증조치를 간첩행위로

---

<sup>136</sup>- 전성훈,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찰·검증 전략,” pp. 253~256.

간주하여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러시아, 리비아 등 핵폐기 국가의 경험을 사례로 하여, 북한의 우려가 근거 없는 것임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관리들에게 개방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21세기의 국제질서에 대해서 교육하고 일깨워주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핵폐기와 검증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강령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과거 핵폐기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서 북한의 실정에 맞는 핵폐기·검증의 행동강령과 지침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구소련의 핵폐기, 남아공에 대한 검증, 리비아의 핵폐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북한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행동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요원훈련용 교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비핵화에 다국적 참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강령과 지침 및 교재는 국·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 비핵화 전 과정을 관할하는 통합된 전략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각각 북핵폐기와 검증을 전담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폐기를 완료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질서에도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장관급 북핵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하고, 그에게 북한 비핵화와 검증 및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관련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력한

I
II
III
IV



리더십하에서 통합된 전략과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것은 북핵폐기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과 입장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다섯째, 인력전환을 위한 준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는 남북한의 상생과 화해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북한의 핵과학기술자들에게 남한에서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적 전환을 위한 연구계약과 기술 상업화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과학기술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한 구소련의 경험을 고려할 때, 북한 기술자들을 북한 내에서 소화하는 대신에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고용하여 이들에게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에 고급인력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고, 해당 기술자들은 생활환경이 생소한 외국보다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고급인력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평화적인 분야에서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인적 전환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한 논리는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과 이질감 해소 및 평화통일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핵기술이 남한으로 확산된다는 오해가 없도록 한·미 간에 철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섯째, 핵폐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다자화·국제화되는 추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을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전략을 써야 한다. 북핵폐기 협상의 다자화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CTR 프로그램과 Global Partnership Program 등 범세계적인 핵폐기를 위해 가동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재정과 기술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서 국제 사회 전체의 안보문제이므로 북한 비핵화에 가급적 많은 나라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명분이 있으며, 이들의 동참을 비용과 부담을 분산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과거 대북 핵사찰의 경험을 토대로 한 방안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을 토대로<sup>137</sup> 한·미 간에 다음과 같은 북한 비핵화 추진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첫째, 북한관료들과의 건설적인 실무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폐기의 주체와 그 대상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신용을 쌓으면서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연하고 우호적인 접근을 통해서 핵폐기 과정을 이행할 주체와 여기에 동참하게 될 북한관리들 사이에 건설적인 실무관계를 구축해야만 비핵화 과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해 경계감이 강한 북한의 경우, 핵폐기 과정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간첩활동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핵폐기 이행단계별로 북한당국과 비핵화에 참여하는 이익집단에게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폐기 과정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에도 이득이라는 사실을 북한당국이 확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큰 틀의 보상이나 거래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핵폐기

<sup>137</sup>- Joel Wit, et al. (eds.),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orth Korea*, pp. 20~30.

이행과정의 단계별 조치들이 즉각적으로 경제적, 기술적 혜택을 유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거부감이 완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핵폐기 과정에서 수행하게 될 각종 프로젝트에 북한당국이나 기술자들을 참여시켜서 새로운 기술을 교육시키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북한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해야 한다.

셋째, 북한 비핵화 과정에 북한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핵폐기를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의 결단과 더불어 북한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료들의 전폭적인 호응이 필요하므로 북한 관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성공해야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관리들의 애국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이 독재체제라고는 하지만, 중앙정부 내에서도 조직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핵폐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러한 차이를 최대한 이용할 필요도 있다.

넷째, 준수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이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핵폐기 과정에서 합의사항의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분쟁이 확대되어서 핵폐기 과정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혹 준수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다섯째, 한·미가 역할분담을 통해서 정치적 대화와 기술적 대화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인 대화는 기술차원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까다로운 기술적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기술적인 대화가 정치적 대화의 여건을 우호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까다롭다고 여겨졌던 기술적인 문제가 양측의 양보와 협조를 통해 해결된다면 그 자체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여섯째, 북한을 상대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핵폐기 과정에서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원칙적인 입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나 한국의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타협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실패로 몰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서로를 단속하고 견제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미국의 제의를 초기에는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치·경제적 효용성이 있는 사업과 핵폐기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고위층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치·경제적 효용성을 가진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핵폐기와 함께 추진할 수 있다면 북한당국의 협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에너지부는 러시아 원자력부와 함께 위기감시센터를 세우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그 목적은 핵사고와 같은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1986년 체르노빌 사건을 겪은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이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회사들을 하청업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북한당국과 관리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

II

III

IV

여덟째, 북한의 특성을 고려한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거의 대북 협상 및 사찰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면서 북한의 특성을 고려한 검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1992년 초부터 1년여간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핵사찰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한 경험이 있고, 미국은 1994년에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의 이행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영변에 파견, 핵물질의 관리와 핵사찰을 실시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한·미 양국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한다면 검증제도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3) 북한 급변사태 시의 WMD 대책

북한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북한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 핵무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 혹은 한·미 양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두될 것이다. 핵비확산 차원에서도,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북한의 핵무기를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핵개발을 주도했던 세력에 의한 증거인멸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사회혼란의 와중에 핵물질과 장비의 탈취 및 유출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와중에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증거를 찾는데 애를 먹은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연합군이 진입하기 전에 관련 시설들이 약탈당하고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sup>138</sup> 1993년부터 2000년까지 UNSCOM 부단장으로 이라크 사찰을 주도했던 덜퍼(Charles Duelfer)도 이라크 당

국이 사찰대상 시설을 사전에 청소하고 관련 증거와 자료를 치우거나 컴퓨터 기록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등의 ‘반칙행위’(infracation)가 만연해서 사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139</sup>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핵시설 장악과 검증에 위한 대비체계가 사전에 구축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현장을 가급적 원상태로 보존하는 것이다. 핵무기 및 원자력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팀을 신속하게 파견해서 해당지역과 시설 및 인물 등을 장악하고 핵탄두와 핵물질 및 관련기술과 정보를 안전하게 확보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외부유출 등의 사태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증거라도 놓칠 수 없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핵 관련 상황을 신속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국제검증기구와는 별도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범정부차원의 통합된 조직을 구성하고, 한·미동맹차원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로, 2006년 9월 11~16일 미국의 ‘국방위협감소처’(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DTRA)가 서울에서 군비검증단과 회의를 가진 바 있는데,<sup>140</sup> 이러한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핵무기 해체 및 검증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WMD 제거를 위한 한·미 작전계획 수립과 연관된 사안이므로 핵무기와 핵시설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한·미 합동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핵무기에 대한 통제계획은 화학·세

138. Barton Gellman, “Iraqi nuclear site is found looted,” *Washington Post*, May 4, 2003, p. A01.

139. Charles Duelfer, “Hide and seek,” *New York Times*, June 23, 2009.

140. 『중앙일보』, 2006년 9월 12일.

I
II
III
IV

군무기를 포괄하는 WMD 전반에 대한 통제계획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WMD 관련대책은 불가피하게 다른 현안들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대책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WMD의 안전한 관리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에게는 북한의 안정과 통일까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한·미 전략적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급변사태에 대비한 포괄적인 협력대책이 수립되고 그 일환으로 WMD 관련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적절한 수순이라고 본다.

#### (4) 북한 내부고발자의 활용

북한 내의 현지사정을 잘 아는 내부고발자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핵개발 실태와 현장 상황에 익숙한 내부고발자야말로 정보가 극히 제한된 북한과 같은 폐쇄체제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찰작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핵무기의 개발현황과 현지시설의 운용에 정통한 정보제공자는 최첨단의 과학기술 장비 못지않은 귀중한 정보자산이다. 이란의 비밀 핵개발 사실이 발각되어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2002년 8월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가능했다.<sup>141</sup>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미 양국은 내부고발자를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북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내부

---

<sup>141</sup> 전성훈, “이란 핵 사태로 본 北核 문제의 앞날,” 『신동아』, 2004년 1월, pp. 400~409.

고발자의 신분이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들의 신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책도 강구해야 한다.

### (5) 한국의 비핵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신뢰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미국의 핵무기도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입장이다. 사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한의 핵무장을 거론하면서 북핵폐기라는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흔들려고 시도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핵보유를 공식 선언한 2005년 2월 10일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인 3월 31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국의 모든 핵무기들을 철거시키고 남조선 자체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42</sup>

북한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런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이 남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한은 이미 완전히 비핵화 되었다는 사실을 미국이 보장하고,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또한 미국정부가 나서서 한국은 투명하고 모범적인 비핵국가라는 점을 확인하고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의혹도 불식시켜야 한다. 결국 한국의 비핵정책에 대해서 미국정부가 강력한 지지와 신뢰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한국을 핑계로 국제공조의 초점을

142. 『조선중앙방송』, 2005년 3월 31일.

I
II
III
IV



흐리게 하려는 북한의 전략을 제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완전한 의견일치를 봐야 한다.

#### (6) LWR 제공 가능성 활용

북한이 비밀리에 HEU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네바 기본합의 위반문제가 불거지자, 부시 행정부는 대북 중유제공은 물론 경수로사업까지 중단해버렸다. 현재로선 경수로사업의 재기를 기약할 수 없지만, 북핵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 위해서는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의 벽을 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에 대한 북한의 집착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이다.

사실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 미국도 기존의 ‘경수로 불가 입장’을 서서히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9·19 공동성명 협상과정에서 경수로에 대한 언급자체를 반대하다가 결국 북한의 경수로 보유권한을 원칙적으로 인정했고, 6자회담이 지지부진하자 고농축우라늄 포기를 조건으로 경수로 건설을 용인한 이란의 선례를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도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미국에서 나온 바 있다. 예를 들어, 힐 차관보는 *Washington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북한과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었다.<sup>143</sup> 만약 북한에 경수로를 다시 지어준다면,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을 구매하

---

<sup>143</sup>- “Nuclear ‘incentives,’” *Washington Times*, March 21, 2008.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이란 인센티브의 하나로 이란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지지하고 러시아의 LWR 공사를 승인하는 조치를 포함한 대이란 인센티브 패키지를 준비했는데, 이는 2006년 패키지를 재포장한 것이지만 제공시점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Nicholas Kralev, “Incentives package prepared for Iran,” *Washington Times*, March 18, 2008.

는 대가로 경수로의 핵연료를 제공하는 거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탄두 해체에서 나온 HEU를 포기하는 대가로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제공받은바 있다.<sup>144</sup>

1990년대 초 제네바 협상에서 한국은 회담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회담결과만 브리핑 받다가 나중에 경수로사업 비용의 70%를 부담했지만 미국의 결정으로 다시 포기하게 된 경수로사업의 교훈을 되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경수로사업 과정에서 우리가 입은 정치적·외교적·경제적 손실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정립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대미·대북 협상력을 제고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정부도 한국 사회에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과정에서 겪은 수모를 다시 겪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LWR 제공은 한·미가 전략적 판단하에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

---

<sup>144</sup>-Rose Gottemoeller, "A deal that worked," *New York Times*, April 26, 2003.



## 참고문헌

### 1. 단행본

서진태. 『미국의 New Look 정책의 재조명』. 성남: 세종연구소, 1997.

전성훈. 『미국의 NMD 구축과 한반도의 안전보장』. 서울: 통일연구원, 2001.

\_\_\_\_\_. 『북핵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KINU 정책연구시리즈 07-08. 서울: 통일연구원, 2007.

Axelrod, Robert.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Baker, Howard and Lloyd Cutler. *A Report Card on the Department of Energy's Nonproliferation Programs with Russi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Energy, January 10, 2001.

Bernstein, Paul. *International Partnerships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y 2008.

Catudal, Honoré. *Nuclear Deterrence--Does It Deter?*.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1986.

Cheon, Seongwhun.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6.

Davis, Jacquelyn. *et al.* (eds.), *Updating U.S. Deterrence*

- Concepts and Operational Planning*. Cambridge, MA: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February 2009.
- Dunn, Lewis and Amy Gordon. *Arms Control Verification & the New Role of On-Site Inspection*. Lexington: Lexington Books, 1990.
- Finlay, Brian and Elizabeth Turpen. *25 Steps to Prevent Nuclear Terror: A Guide for Policymakers*. Washington, D.C.: The Henry Stimson Center, 2007.
- Freedman, Lawrence.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1989.
- Gray, Colin. *The Second Nuclear Age*. Boulder: Lynne Reinner Publishers, 1999.
- May, Michael. *et al*, (eds.), *Verifying the Agreed Framework*. Livermore: Center for Global Security Research, 2001.
- Morgan, Patrick. *Deterrence No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Mullen, Michael. *The Future of Global Engagement*.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May 18, 2009.
- Parachini, John. *et al*, (eds.), *Diversion of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Expertise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05.
- Schoff, James. *Realigning Priorities: The U.S.-Japan Alliance & the Future of Extended Deterrence*. Cambridge, MA: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March 2009.
- Schwartz, Stephen. (ed.), *Atomic Audit: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U.S. Nuclear Weapons since 1940.*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8.

Whang, JooHo. *Dismantlement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f DPRK Nuclear Facilities*, CMC Occasional Paper. Albuquerque: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2005.

Wit, Joel. *et al*, (eds.),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5.

## 2. 논문

전봉근. “미-인도 원자력협력 동향과 주요 쟁점.”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7.9.19.

전성훈. “북한 핵보유 의지 확인과 대외협상 및 위협용.” 『북한』. 2009년 7월호.

\_\_\_\_\_.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찰·검증 전략.” 박기덕·이상현 공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성남: 세종연구소, 2007.

\_\_\_\_\_. “미국과 북한의 핵억지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전략연구』. 제XIII권 제2호, 2006.

\_\_\_\_\_. “북한 핵개발의 안보적 함의와 동북아·글로벌 차원의 영향.” 『북핵 문제와 북한 체제변화』. 제21차 세종국가전략포럼, 2009.10.9.

전호환.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에 대한 역사적 조명.” 『국방 정책연구』. 2008년 여름.

한인택. “동맹과 확장억지: 유럽의 경험과 한반도에의 함의.” EAI-JPI 동아시아 평화 컨퍼런스. 동아시아연구원·제주평화연구원 공동 주최. 2009.9.11.

佐々木芳隆. “核戦略の中の日本.” 坂本義和編, 『核と人間: 核と對決する20世紀』. 東京: 岩波書店, 1999.

Allison, Graham. “How to stop nuclear terror.” *Foreign Affairs*. Vol. 83, No.1, January/February 2004.

Ball, Deborah Yarsike and Theodore Gerber. “A survey of Ukrainian scientists: assessing proliferation risk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TCU.” presented to the 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Office of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September 28, 2007.

---

\_\_\_\_\_ . “Russian scientists and rogue states: does Western assistance reduce the proliferation threat?”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2005.

Bolton, John R. “The Bush Administration’s Nonproliferation Policy: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Testimony before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March 30, 2004.

- Carter, Ashton. "Implementing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with North Korea."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 Senate. July 15, 2004.
- Cheon, Seongwhun. "North Korea and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rmed Forces & Society*. Vol. 34, No. 1, October 2007.
- Dunn, Lewis. "The NPT: assessing the past, building the futur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16, No. 2, July 2009.
- Fetter, Steve. "Limiting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Harold Feiveson, ed., *The Nuclear Turning Point: A Blueprint for Deep Cuts and De-Alerting of Nuclear Weap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9.
- Gottemoeller, Rose.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beyond Russia." *Washington Quarterly*. Vol. 28, No. 2, Spring 2005.
- Glosserman, Brad and Ralph Cossa. "U.S.-ROK relations: a Joint Vision and concerns about commitment." *PacNet Newsletter #54*. Pacific Forum CSIS, August 4, 2009.
- Hecker, Siegfried. "Hearing of the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April 30, 2008.
- \_\_\_\_\_. "Report of Visit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February 12~16, 2008."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 Stanford University. March 14, 2008.
- Kamp, Karl-Heinz. "Germany and the future of nuclear weapons in Europe." *Security Dialogue*. Vol. 25, No. 3, September 1995.
- Kang, Jungmin. "Nuclear develop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Korea Conference on The Six-Party Talks and Korea's Energy Secur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Atlanta, Georgia. February 26, 2009.
- Luongo, Kenneth and William Hoehn III. "Reform and expansion of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rms Control Today*. Vol. 33, June 2003.
- Makhijani, Arjun, Stephen I. Schwartz, and Robert S. Norris. "Dismantling the bomb." in Stephen Schwartz (ed.), *Atomic Audit: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U.S. Nuclear Weapons since 1940*.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8.
- Mey, Holger and Andrew Denison. "France's nuclear tests and Germany's nuclear interests." *Comparative Strategy*. Vol. 15, No. 2, 1996.
- Niksch, Larr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ssue Brief for Congress.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May 1, 2003.
-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uclear Regulatory Legislation: 107th Congress; 1st Session." Washington, D.C., June 2002.

Powell, Colin L. “Statement of Secretary of State–Designate Colin L. Powell.” prepared for the Confirmation Hearing of the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January 17, 2001.

Satoh, Yukio. “Reinforcing American extended deterrence for Japan: an essential step for nuclear disarmament.” *Policy Forum Online*. Nautilus Institute, May 5, 2009.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Report o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s Prewar Intelligence Assessments on Iraq.” Washington, D.C., July 2004.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June 16, 2009.

UN Security Council.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April 28, 2004.

U.S. Department of Energy. “Policy forum: energy futures.” *Washington Quarterly*. Autumn 1996.

### 3. 기타

『동아일보』.

『로동신문』.

『신동아』.

『연합뉴스』.

『조선일보』.

『조선중앙방송』.

『중앙일보』.

『朝日新聞』.

*Associated Pres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ewsweek.*

*New York Times.*

*Science.*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http://www.bxa.doc.gov/ComplianceAndEnforcement/TECISydne7\\_03Principles.htm](http://www.bxa.doc.gov/ComplianceAndEnforcement/TECISydne7_03Principles.htm)>.

<[http://www.cns.miis.edu/research/iraq/ucreport/mon\\_intr.htm](http://www.cns.miis.edu/research/iraq/ucreport/mon_intr.htm)>.

<<http://www.ifins.org/pages/kison-archive-kn545.htm>>.

<<http://www.nautilus.org/napsnet/dr/index.html#item2>>.

<<http://www.president.go.kr>>.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8/04/20080419-1.html>, April 19, 2008>.

연구총서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이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東北亞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저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저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저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공저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공저	9,5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공저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저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공저	8,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변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 협동연구총서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제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중무 외 공저	8,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공저	20,000원

##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5,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 통일정세분석

## 비매품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주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 KINU정책연구시리즈

#### 비매품

2007-01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인문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 비매품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Studies Series

비매품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rn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 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www.kinu.or.kr](http://www.kinu.or.kr)